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의안 번호	18
----------	----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 9.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I.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018년 8월1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¹⁾ 및 「지방재정법」 제45조²⁾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II.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조 9,163억원 대비 11.5%, 3조 6,742억원을 증액한 35조 5,905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1)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표 2-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①=②+③	②	③			
총 계 규 모	31,916,346	31,814,065	102,281	35,590,591	3,674,245	11.5
일 반 회 계	22,494,604	22,466,451	28,153	25,206,157	2,711,553	12.1
특 별 회 계	9,421,742	9,347,614	74,128	10,384,434	962,692	10.2

□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2조 7,115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①'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 4,313억 9,500만원³⁾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청하고, ②국고보조금 등 516억 7,600만원, ③지방교부세중 분권교부세 296억 200만원, ④지방교부세중 소방안전교부세 59억 5,700만원, ⑤세외수입에 대해 증액(2,258억 6,000만원) 및 감액(△329억 3,800만원)하여 1,929억 2,100만원을 증액 조정 요청 한 것임

○ **특별회계**는 9,626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3) '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431,395,571,022원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31조 9,163억원 4,600만원)보다 11.5%, 3조 6,742억 4,500만원 증액편성 요청된 것임

- **일반회계**의 경우, 2조 7,115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여 감채기금 적립(6,820억 200만원), 법정 의무경비인 조정교부금(4,837억 2,300만원⁴⁾), 교육청 전출금(4,012억 5,4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까지 포함하여 334개 통계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1개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215개 통계목을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총 9,626억 9,200만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4) '17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분 4,452억 7,300만원 및 '18년도 본예산 부족편성분 384억 5,000만원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1) 지난해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

□ 지난해 '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은 2조 6,695억 500만원이며 이월액(2,076억 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305억 40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4,313억 9,500만원이 발생되었음⁵⁾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6조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의무경비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음⁶⁾

-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2조 4,313억 9,500만원)중 ① 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 ②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③ 타 회계전출 등 이른바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 법정의무경비 등을 정산하기 위해 지난해 '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2조 4,313억 9,500만원)을 금번 추경안의 세입과목중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세입처리 하고자 편성요청한 것임

5)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서Ⅳ-1,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p.24

6)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2) 국고보조금 등⁷⁾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경안중 세입예산에 조정요청된 **국고보조금 등**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당초 내시된 교부액이 증·감 변경통보 됨에 따라 국비를 증·감조정하거나 대응편성 되는 시비를 조정 요청한 것임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3조 5,695억 3,600만원)보다 516억 7,600만원 증액된 3조 6,212억 1,300만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3조 3,020억 9,800만원)보다 495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 한 것으로서 **그린카 보급**(국비 133억 3,600만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국비 130억 91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국비 61억 7,600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국비 42억 3,000만원), **중증장애 인연금**(31억 9,300만원)등의 사업에 대해 증액편성을 요청하고,

 -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11억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10억 8,500만원) 등 18개 사업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국고보조금등에 포함되는 **기금**은 15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고자 18억 4,700만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에 편성요청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628억 9,600만원)보다 2억 3,8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7)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 등”은 ①국고보조금,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③기금으로 구성됨

〈표 3-1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 등	3,569,536	51,676	3,621,213	51,676
국 고 보 조 금	3,296,346	39,605	3,335,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시설운영 △30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5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729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 6,176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236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00 ◦다함께 돌봄사업 △4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20 ◦서울인쇄센터 운영 47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1,100 ◦청년창업꿈터 조성 40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9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3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1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 118 ◦긴급복지지원사업 158 ◦정부양곡 할인지원 4,230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78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039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 △414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 △1,085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508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7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8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49 ◦장애수당-기초 300 ◦중증장애인연금 3,193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4 ◦국가지정문화재보수 1,255 ◦그린카보급 13,336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055 ◦상암수소스테이션운영 1,105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 △360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307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2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표본감시운영경비 2 ◦시도가축방역-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국비) 85 ◦시도가축방역-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15

〈표 3-1B〉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13,091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구축및 운영-경상) △8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및 운영-경상) △136 ◦산불방지대책(산불교육훈련및조사-경상)-국비 △13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자본) △101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 △105 ◦산불방지대책(산불교육훈련및조사-자본)-국비 △0.3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10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 5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2,896	238	63,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238
기금	204,541	1,847	206,3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5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8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39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바라기 센터 운영 1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바라기센터 돌봄 비용,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지원 △113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100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7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7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164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19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1,667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19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모바일헬스케어) 41 ◦결핵 관리-보건소결핵관리사업 △130

3)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고 있으나⁸⁾ 서울시에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⁹⁾

○ 금번 추경안은 회계연도중 보통교부세 296억 2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59억 5,700만원이 추가교부 됨에 따라 일반회계중 지방교부세 수입을 기정예산(1,469억 7,100만원)보다 355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1,104억 4,100만원)보다 296억 2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¹⁰⁾ '18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

8) 2014년 12월31일 「지방교부세법」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9)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분권교부세 보전분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가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교부될 예정임

10)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18년도 본예산(A)	'18년도 교부결정(B)	'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C)	실제수납액 (D=B+C)	추경예산안 편성내역 (E=D-A)	발생사유
보통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110,441	131,450	8,593	140,043	29,602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결정금액 확정 및 '17회계연도 정산분 교부로 인한 차액발생

후 행정안전부가 당초 내시보다 증액된 1,314억 5,0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를 변경통보 하고,¹¹⁾ '17회계연도 정산분(85억 9,300만원)¹²⁾도 교부함에 따라 추경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세입예산을 증액하여 경정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정예산(330억원)보다 59억 5,7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한 바 '18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국민안전처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389억 5,700만원으로 통보¹³⁾함에 따라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8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9조에 회계연도 중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개시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를 간주처리 하여 세입조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 「지방재정법」 제45조¹⁴⁾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정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 등과 같이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경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이 경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186 ('17.12.29), "2018년도 보통교부세(분권보전분) 교부결정 통지"

12) 행정안전부, 교부세과-652 ('18. 4. 6),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교부결정 통지"

13)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1217 ('17.12.29),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 통보"

14)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4)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중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기정예산(1조 2,850억 5,100만원)보다 1,929억 2,1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 '18년 1월 1일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가 설치·운영¹⁵⁾됨에 따라 기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211억 5,600만원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임시적 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요청하고,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매각사업수입중 DMC 사업용지 매각 19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대해 지정용도 변경, 교통개선부담금 완화 등의 조건을 변경하고 매각할 경우라도 금년도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매각사업수입(△191억 1,700만원) 전액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재산임대수입 중 서울국제금융센터(IFC) 토지임대료 수입은 당초 16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IFC임대료는 익년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기편성된 토지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19년도에 부과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안정화기간

1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11년도~’17년도)은 공시지가의 1%, 3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 오류를 경정 요청한 것임

- 임대료 수입 산정오류에 따라 기편성된 세입예산에 대해 △131억원을 감액편성 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세입예산의 편성오류를 추경으로 조정하지 못할 경우, 세입결산시 재원없는 미수납액 규모만 증가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세입편성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일 반 회 계	22,494,603	2,711,553	25,206,156	
세 외 수 입	1,285,051	192,921	1,477,973	
경상적세외수입	534,250	△30,037	504,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바이오허브 임대료 △56 ◦서울국제금융센터 △13,100 ◦DMC 사업용지매각 △19,117 ◦친환경유통센터 토지임대료 2,900 ◦시립승화원 화장료수입 △267 ◦서울추모공원화장료 수입 △397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반환금 이자반납 1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 수 입)	750,801	222,959	973,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관광마케팅(주) 잔여자본금 1,570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반환금 집행잔액 19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1,156 ◦2018년 삼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위탁연구 40
지 방 교 부 세	146,971	35,559	182,530	
보 통 교 부 세 (분 권 교 부 세)	110,441	29,602	140,043	◦분권교부세 추가교부 29,602
소방안전교부세	33,000	5,957	38,957	◦소방안전교부세 추가교부 5,957
국고보조금 등	3,569,536	51,676	3,621,213	
국 고 보 조 금	3,302,098	49,591	3,351,690	◦회계연도중 증·감 교부 39,605
국가균형발전특별 회 계 보 조 금	62,896	238	63,134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238
기 금	203,852	179	204,031	◦정부 기금사업 증·감 통보 179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396,569	2,431,395	2,827,965	
순세계잉여금	-	2,431,395	2,431,395	◦'17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431,395
내 부 거 래 (전 입 금)	-	-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9조 4,217억원)보다 10.2%, 9,626억원 증액된 10조 3,844억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1)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경정

-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인 바
 - '18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1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를 전망하여 미리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에 따라 기편성된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을 경정요청한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기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귀속된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금번 추경안을 통해 일반회계전입금(2,211억 5,6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1,309억 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932억 3,6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58

억 5,5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5억 9,2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300만원)는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요청하고,

- 도시개발특별회계(△133억 6,5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31억 1,300만원), 소방안전특별회계(△7,2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3〉 순세계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①	'18년도 본예산 기반영액 ②	기반영후 순세계잉여금 잔액 ①-②	추경 · 감액 요청 액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1)}	221,156	0	221,156	221,156
주택사업 특별회계	250,277	119,367	130,908	130,908
교통사업 특별회계	186,785	93,549	93,236	93,23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493	1,638	5,855	5,855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2,450	1,858	592	592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3 ^{주2)}	0	3 ^{주2)}	3 ^{주2)}
도시개발 특별회계	85,232	98,597	△13,365	△13,365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39,738	142,852	△3,113	△3,113
소방안전 특별회계	2,822	2,895	△72 ^{주3)}	△72 ^{주3)}

※ 주1) 기존 특별회계 폐지로 일반회계로 귀속된 순세계잉여금을 해당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

주2) 3,752천원

주3) 72,804천원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7710 ('18. 7.17)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며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경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지방회계법시행령」 16)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서
 -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회신하였음¹⁷⁾

- 서울시가 '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중 46%¹⁸⁾를 '18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바

16) 「지방회계법시행령」

■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17)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18 ('17. 9.18),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7조 해석요청에 대한 회신”

18) 4,607억 5,7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선반영분(897억 3,000만원) 제외

- 세출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법령의 입법취지와는 다른 적용 사례일 수밖에 없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관행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

□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경정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정부의 증·감 변경내시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 **교통사업특별회계**(26억 3,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281억 4,1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69억 5,700만원)는 기정예산중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50억),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29억 800만원)는 소방안전특별회계(△1,500만원)은 감액조정 요청하는 것으로서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중 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의 경우, 354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4〉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교통사업계 특별회계	24,821	2,632	27,4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32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82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78
주택사업계 특별회계	281,562	28,141	309,7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35,490 ◦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5,431 ◦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사업 감액 △331 ◦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1,584
도시개발계 특별회계	62,736	6,957	69,6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납토성 복원) 7,00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감액) △2,000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043 ◦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3,000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5,700	△5,000	30,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릉 ~ 구리 △5,0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47,046	△2,908	544,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2,908
소방안전계 특별회계	2,852	△15	2,8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5

3) 회계간 전입에 따른 세입편성

-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외에 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을 구성하고 있어 금번 추경을 통하여 회계간 전입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정요청하고 있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¹⁹⁾(459억 3,800만원)과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30억 5,6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타회계전입금 489억 9,0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2,278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①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체(버스) 유가보조금 등을 추가 편성하고자 일반회계로부터 2,327억 9,900만원을 전입하고,

19) 지하철 9호선 변경실시협약('13.10)에 따른 '18년 대체투자비 490억 3,800만원(신호설비 109억 8,300만원, 통신/AFC설비 380억 5,400만원) 중 기정예산 31억원을 제외한 459억 3,800만원을 서울시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로 지급하기 위해 추경 편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비고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계	48,803	45,938	94,741	
	민간경상사업보조	45,703	-	45,703	재정지원금=17년 4분기 ~ 18년 3분기[사업운영비(1,518억6,100만원)-사업수입(1.084억 1,1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100	45,938	49,038	18년도 대체투자비 ^{주1)} (490억 3,800만원)=신호설비 109억 8,300만원, 통신/AFC설비 380억 5,400만원

※ 주1 : 변경실시협약에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의 경우 대체투자비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음
(동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지하철9호선 관리운영계획 승인을 통해 시행)

- ② 「주차장법 시행령」 20)에 근거하여 '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동 특별회계의 주차장관리계정으로 전입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2억 1,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③ 아울러, 동 특별회계의 계정간 전·출입을 통해 재원을 조정하고자 기편성된 교통관리계정부족분 전입(주차장관리계정)(1,542억 3,100만원) △101억 1,5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5〉 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역	기 정 예 산	증 감	추 경 (안)	비 고
계	914,848	227,895	1,142,744	
일반회계전입금 (버스재정지원 등)	257,606	232,799	490,405	
법 정 전 입 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129,275	5,211	134,486	'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분(주차관리계정)
교 통 관 리 계 정 부 족 분 전 입 (주차장관리계정)	154,231	-10,115	144,116	'18년도 기편성 예산 감액조정
택시·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342,098	-	342,098	
일반회계전입금	31,637	-	31,637	

20)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확장(녹천교 ~ 의정부시계) 확장(582억 5,300만원) 등 7개 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기타회계전입금 771억 3,100만원을 전입받기 위해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① 법정전입금(재산세 도시지역분)**은 '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를 동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사항으로²¹⁾ '17회계연도 결산분 전입 364억 8,100만원을 전입하고, **② 서부간선도로** 등 49개 사업의 재원을 증액하고자 일반회계로부터 기타회계전입금 680억 8,100만원을 전입받기 위해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29억 800만원)을 감액편성함에 따라 매칭되는 시비를 감액조정 하기 위해 기타회계전입금 △29억 8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소방안전특별회계 중 기타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8,115억 4,600만원)보다 45억 2,5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18년도 본예산 의결 후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²²⁾됨에 따라 '18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추가교부액 73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의결 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기 편성된 일반회계전입금중 일부를 감액 조정하기 위해 △28억 1,7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21)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22)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1217 ('17.12.29),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 통보"

〈표 3-6〉 소방안전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역	기 정 예 산	증 감	추 경 (안)	비 고
계	811,546	4,525	816,072	
지역자원시설세	275,625	-	275,625	
소방안전교부세	24,750	7,343	32,093	① 특수수요 115억원(소방헬기 구매) ② 특수수요 제외분 274억 5,700만원의 75% (205억 9,500만원) ※ 25%는 안전분야(안전총괄본부) 편성
일반회계전입금	511,171	△2,817	508,354	'18년도 기편성 예산 감액조정

※ 백만원 미만 절사

〈표 3-7〉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165,087	48,994	1,214,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 3 ◦ 기타회계(일반)전입금 48,990
교통사업 특별회계	1,347,371	318,663	1,666,0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업수입 1,800 ◦ 일반부담금 △6,900 ◦ 국고보조금 2,632 ◦ 순세계잉여금 93,236 ◦ 기타회계(일반)전입금 232,799 ◦ 기타회계(계정간)전입금 △10,116 ◦ 법정(재)산세(도)지역분전입금 5,21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67,312	69,017	336,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00 ◦ 순세계잉여금 △3,113 ◦ 기타회계(일반)전입금 77,131
주택사업 특별회계	1,635,383	181,955	1,817,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비 반환금 883 ◦ 그 외수입 22,021 ◦ 국고보조금(기금) 28,141 ◦ 순세계잉여금(도정계정) 115,438 ◦ 순세계잉여금(재촉계정) 10,137 ◦ 순세계잉여금(국민계정) 5,333
도시개발 특별회계	1,227,926	96,763	1,374,6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7,00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기금) 1,957 ◦ 지방채 △1,391 ◦ 순세계잉여금 △13,365 ◦ 기타회계(일반)전입금 36,481 ◦ 기타회계(법정)전입금 68,08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96,258	37	1,096,2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2,908 ◦ 순세계잉여금 5,855 ◦ 기타회계(일반)전입금 △2,908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28,338	592	28,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 592
소방안전 특별회계	823,778	4,438	828,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15 ◦ 순세계잉여금 △72 ◦ 기타회계 전입금 7,343 ◦ 기타회계(일반) 전입금 △2,817
공기압하수도시업 특별회계	960,285	242,229	1,202,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1,073 ◦ 기타회계 전입금 221,156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추경안의 세출편성 특징

1)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법정경비 등의 정산

- 「지방회계법」 제19조²³⁾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면 법정 정산 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제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③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에 대한 정산, ④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 증수분에 대한 정산, ⑤지방소비세 증수분 발생 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추가 전입 등을 추경안으로 정산하였음
- 금번 추경안에는 지난 '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세제 잉여금(2조 4,313억 9,600만원)에 대해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5,732억 4,4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4,012억 5,400만원), ③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416억 9,400만원) 정산 등을 포함한 1조 161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것임

23)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아울러 '18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편성한 ①조정교부금 중 384억 5,000만원과, ②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중 44억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법정 경비를 정산하고자 하는 것임

〈표 4-1〉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17회계 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18년도 본예산 미편성분 ②	'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③=①+②
			(계)	'18년도 추경편성(안) 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431,395	2,380,198	51,198	42,888 2,423,085 ^{주4)}
법 정 경 비 등	소계	⑥=①+~+⑤	1,067,390	1,016,192	51,198	42,888 1,059,080
	교육청 전출 ^{주1)}	①	401,254	401,254	-	- 401,254
	자치구 교부 ^{주2)}	②	573,244	573,244	-	38,450 611,694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 ^{주3)}	③	52,117	41,694	10,423	- 41,694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④	14,349	-	14,349	- -
	지역상생 발전기금	⑤	26,426 ^{주5)}	-	26,426	4,438 4,438 ^{주6)}
순 세 계 잉 여 금	소계	⑧=⑦-⑥	1,364,005	1,364,005	-	- 1,364,005
	감채기금	⑨=⑧×0.5이상	682,002	682,002	-	- 682,002
	가용재원	⑪=⑩-⑨	682,003	682,003	-	- 682,003

※ 백만원 미만 절사

주1) 지방세 전출, 담배소비세 전출, 지방교육세 전출

주2)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세 징수교부금

주3) 도시개발(특)전출, 교통사업(특)전출, 주택사업(특)전출

주4) '17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2조 4,313억 9,600만원) + '18년도 본예산 미편성분(428억 8,800만원)

주5) '19년도 본예산 편성필요

주6) '16회계연도 미정산분

〈표 4-2〉 법정경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정 산 필 요 액	근 거	원 인
자 치 구 출	조정교부금	445,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시행령 117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중 보통세의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정교부금	69,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26조 및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분 재산세 100%
	징수교부금	58,5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징수법」 제17조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 ◦ 「서울특별시시세징수조례」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중 자치구 위임세목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보통세정산	211,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세 100% ◦ 담배소비세 45% ◦ 보통세 10%
	지방교육세	216		
	담배소비세	189,096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14,349 ^{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42조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조례」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
지역상생발전기금		26,426 ^{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 중 취득세 보전분 6% 제외)의 35%
타 회 계 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 출	36,4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8조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 출	10,423 ^{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정비계정)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 출	5,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 주1) 추경안중 미편성 함에 따라 향후 정산 필요

2) 국비 변경 등에 따른 증·감편성 요청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²⁴⁾ 등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지원하는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된 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국고보조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매칭(Matching)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이 편성된 후 국비가 당초 편성액보다 증액교부되거나 감액교부 되면 추경안을 통해 기 편성된 국비와 이에 대응되는 시비를 증·감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추경안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국비 354억 9,000만원·시비 393억 5,200만원 증액) 사업을 포함한 46개 세부사업에 대해 추가교부 되는 국비와 이에 대응되는 시비를 증액편성 요청하고,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국비 △54억 3,100만원·시비 △100억 1,900만원 감액) 사업을 포함한 32개 세부사업에 대해 편성액보다 부족수령이 예상되는 국비와 매칭시비를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표 4-3〉 국비 증액교부에 따른 추경안 편성(5억원 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액	국비		추경안
				국비	시비	
주택건축국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789) 288,804	74,842	35,490	39,352	(×58,279) 363,646
주택건축국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173,493) 254,457	19,201	13,091	6,109	(×186,585) 273,65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돌봄서비스 - 보육교직원 인건비	(×68,772) 204,556	18,264	6,176	12,088	(×74,949) 222,820
기후환경본부	그린카 보급	(×40,569) 68,264	16,124	13,336	2,788	(×53,905) 84,388
문화본부	풍납토성 복원	(×42,000) 132,242	10,000	7,000	3,000	(×49,000) 142,242
도시재생본부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	6,000	3,000	3,000	(×3,000) 6,000
관광체육국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1,436) 5,987	5,560	1,667	3,892	(×3,104) 11,547
복지본부	중증장애인연금	(×66,944) 113,676	5,555	3,193	2,362	(×70,137) 119,232
복지본부	정부양곡 할인 지원	(×15,776) 16,283	4,406	4,230	175	(×20,007) 20,690
복지본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	4,241	1,508	2,732	(×1,508) 4,24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돌봄서비스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4,358) 41,053	4,041	2,729	1,312	(×7,088) 45,094
도시교통본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46) 2,177	3,640	1,820	1,820	(×2,066) 5,817
경제진흥본부	청년창업꿈터 조성	-	2,550	405	2,145	(×405) 2,550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148) 6,726	2,148	1,039	1,108	(×6,188) 8,875
기후환경본부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5,765) 7,865	2,055	2,055	-	(×7,820) 9,920
복지본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9,491) 95,070	1,945	972	972	(×40,464) 97,016
문화본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2,947) 18,753	1,904	1,255	649	(×14,202) 20,658
기후환경본부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110) 424	1,841	1,105	736	(×1,215) 2,265
도시교통본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57) 714	1,560	780	780	(×1,137) 2,274
여성가족정책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30) 60	1,030	15	1,015	(×45) 1,090
평생교육국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1,024	307	716	(×307) 1,024
물순환안전국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	-	1,000	500	500	(×500) 1,000
복지본부	장애수당 - 기초	(×9,003) 29,112	600	300	300	(×9,303) 29,712
문화본부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143) 3,377	559	100	459	(×243) 3,937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62) 62	538	238	300	(×300) 600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표 4-4〉 국비 감액교부에 따른 추경안 편성(△3억원 이상 감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감액	국비		추경안
				국비	시비	
주택건축국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13,042) 23,921	△15,451	△5,431	△10,019	(×7,610) 8,470
안전총괄본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5,000) 10,000	△10,000	△5,000	△5,000	-
경제진흥본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608) 8,692	△3,477	△1,043	△2,434	(×1,565) 5,215
푸른도시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964) 6,964	△2,000	△2,000	-	(×4,964) 4,964
경제진흥본부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계획	(×1,100) 2,020	△2,000	△1,100	△900	(×-) 20
복지본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종합	(×6,006) 9,010	△1,628	△1,085	△542	(×4,921) 7,381
주택건축국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2,995) 2,995	△1,584	△1,584	-	(×1,410) 1,410
기후환경본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	(×2,009) 4,352	△779	△360	△419	(×1,649) 3,573
푸른도시국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지본)	(×105) 772	△772	△105	△666	-
복지본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기본	(×7,613) 11,419	△621	△414	△207	(×7,198) 10,798
복지본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154) 1,938	△391	△381	△9	(×773) 1,547
주택건축국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679) 4,407	△331	△331	-	(×347) 4,075
복지본부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1,265) 2,531	△322	△161	△161	(×1,104) 2,208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3) 결산이후 국고보조금의 반환

- 세출과목중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회계연도 결산이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으로서 본예산이나 추경편성을 통하여 반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재무활동에 해당되어 사업별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예산서에만 기재하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19개 실·본부·국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액 635억원을 추가로 편성요청 하고 있는 바
 -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세출과목을 반환금기타(편성목), 국고보조금 반환(통계목)으로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경우, 이를 참고하여 단일 세부사업명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19개 실·본부·국의 55개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은 세부사업명을 9개의 상이한 사업명으로 편성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은 동일 실·본부·국 내에서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각기 다른 사업명으로 편성요청한 바
 -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세부사업명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세부사업명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

써 사업명을 통해 사업내용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5A〉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세부사업 편성요청 현황

(단위 : 천원, 쪽)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증액요청	예산서
여성가족정책실	반 환 금 및 기 타	211,000	5
	”	3,102,237	7
	”	32,215	7
일자리노동정책관	국 고 보 조 금 집 행 잔 액 반 납	577,110	9
	”	4,289	11
	”	329,419	11
정 보 기 획 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금	201	13
	”	406	14
	”	8,026	15
기 획 조 정 실	국 고 보 조 금 반 환	63,640	16
경 제 진 흥 본 부	국 고 보 조 금 집 행 잔 액 반 납	543	23
	”	12,458	23
	”	1,450	26
	”	2,175	27
복 지 본 부	반 환 금 및 기 타	143,463	28
	”	531,787	31
	”	143,350	34
	보 전 지 출	4,625,131	35
	반 환 금 및 기 타	1,045,548	37
	”	652,294	39
	반 환 금	1,447,478	41
문 화 본 부	반 환 금 및 기 타	12,818	49
	국 고 보 조 금 반 환	96,114	50
	”	1,039,052	52
	”	97,000	53

〈표 4-5B〉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세부사업 편성요청 현황

(단위 : 천원, 쪽)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증액요청	예산서
기후환경본부	반 환 금 및 기 타	10,337,651	58
	”	3,948,991	59
	”	44,420	60
	”	4,336	62
행 정 국	국 고 보 조 금 반 환 금	12,747	64
평 생 교 육 국	반 환 금 및 기 타	34,000	69
관 광 체 육 국	반 환 금 및 기 타	1,001	71
	국 고 보 조 금 반 환	469,848	73
	”	800,000	75
시 민 건 강 국	반 환 금 및 기 타	128,021	77
	”	34,900	78
	”	467,515	79
	”	△379,658	80
	”	119,522	81
	”	54,323	84
	”	40,462	86
안 전 총 괄 본 부	광역도로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8,950,000	94
도 시 계 획 국	국 고 보 조 금 반 납	259	104
주 택 건 축 국	국 비 보 조 금 반 환	1,300,156	106
	”	7,800,000	107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4,289,518	108
푸 른 도 시 국	반 환 금 및 기 타	32,760	110
	”	32,636	112
	국 고 보 조 금 반 환 금	87,000	114
	”	601,422	115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950	119
물 순 환 안 전 국	반 환 금 및 기 타	100,600	121
서 울 역 사 박 물 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9,561	133
시 립 미 술 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16,965	134

4) 회계간 유상이관 및 전출에 따른 세출편성

□ 회계간 유상이관에 따른 세출편성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164)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사업별설명서 p.168)
 -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사업별설명서 p.27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²⁵⁾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다른 회계로 이관할 경우 유상이관 하도록 정하고 있어 ①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②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건립**, ③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유상이관 경비(부지매입비)를 편성요청한 것임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은 성동구 용답동 소재 서울새활용플라자 부지(14,314㎡)를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 하고자 114억 5,100만원 전액을 편성요청한 것임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은 강서구 마곡동 소재 서남음식물처리시설 부지(9,282㎡)를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 하고자 21억 1,300만원 전액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은 서울 용답동 소재 성동도로사업소 부지(11,229㎡)를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 하고자 기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75억 800만원 전액을 편성요청한 것임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표 4-6〉 유상이관을 위한 매입비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m²)

세 부 사 업	총이관금액	기납부액 ^{주1)}	부 과 면 적	추경예산(안)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11,451	0	14,314	11,451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2,113	0	9,282	2,113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7,958	449	11,229	7,508

※ 주1) '18. 8.31 현재

□ 회계간 전출을 위한 세출편성

○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²⁶⁾로서 해당 회계 고유목적사업과 차입금 상환, 회계간 전출을 통한 타 회계 재정지원 등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바

- 금번 추경안의 경우, '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회계간 법정전출금을 편성하고, 일부 회계의 자원부족을 완화시키고자 회계간 전출금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로 전출금 6,869억 4,3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음

26)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표 4-7〉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 편성현황^{주1)}

(단위 : 백만원)

전출	전입	추경안	산출근거
일반회계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48,990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459억 3,800만원)과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30억 5,600만원) 부족분 전입
	교통사업 특별회계	232,799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원부족분 전입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	5,212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전입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77,13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자원부족분 전입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확장 등)
	도시개발 특별회계	68,081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원부족분 전입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등)
	도시개발 특별회계	36,482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08	◦ 의료급여사업(국비) △27억 5,900만원 ◦ 의료급여 관리사지원(국비) △ 1억 6,100만원 ◦ 의료급여사업(국비) 1,100만원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1,156	하수도특별회계폐지에 따라 전입된 하수도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을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

※ 주1) 법정전출금 제외. 단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출금 포함

○ 아울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편성요청
한 바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27)에 따라

27)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자치구 교부금 등 법정경비(1조 673억 9,000만원)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 따라 ①감채기금(기금전출금) 6,820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②재정투융자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공기업특별회계 등으로부터 3,550억 4,600만원을 편성하며 ③기후변화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기금전출금 300억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음

〈표 4-8〉 재정투융자기금 전출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 부 사 업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비 고
계			105,445	355,046	355,046	
일 반 회 계	재정투융자기금상환	예수금 원금상환	58,672	64,500	123,172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분담금계정)	채투기금예탁금	예탁금	55,445	15,108	70,554	여유자금 예탁
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	재정투융자기금상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	-	1,017	1,017	본예산 미편성 예수금이자 반영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재정투융자금예탁금	예탁금	-	18,500	18,500	여유자금 예탁
" (도시 및 주거환경계정)	재정투융자금예탁금	예탁금	-	69,000	69,000	여유자금 예탁
" (재정비축진계정)	재정투융자금예탁	예탁금	-	10,000	10,000	여유자금 예탁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투융자기금상환 (도시개발)	예수금이자상환	-	6,784	6,784	본예산 미편성 예수금이자 반영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재정투융자금예탁금	기타자본적지출	-	150,000	150,000	여유자금 예탁
	재정투융자기금상환	기타비유동부채상환	-	20,279	20,279	예수금 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305	△143	162	예수금 이자상환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2.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서울혁신기획관

□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별설명서 p.3)

- 동 사업은 기정예산(11억 7,700만원)보다 10억 700만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서
 - 서울시가 '17년 10월부터 운영한 “민주주의 서울”을 확대운영 하기 위해 ①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9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하고, ②시스템 재개발을 위해 전산개발비 7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①정보전략계획(ISP) 수립(총사업비 2억 5,900만원)을 위해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용역을 실시하고, ②시스템 재개발(총사업비 7억 4,800만원)도 동일한 기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²⁸⁾

28) ①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7513 ('18. 7.13.)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해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실행 계획”

■ 민주주의 서울 정보화 종합 계획 수립(ISP) 추진계획

- '18.11. 민주주의 서울 정보화 종합 계획 수립(ISP) 용역 입찰

- '19. 1.~'19.12. 민주주의 서울 정보화 종합 계획 수립(ISP) 용역 실시

■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추진계획

- '18.11.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용역 입찰

- '19. 1.~'19.12.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②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7611 ('18. 7.17.)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 및 재개발 계획”

■ 추진일정

- '18.11.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및 재개발 사업 공고

- '18.12.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및 재개발 사업자 선정

- '19. 1.~'19.12.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및 재개발 사업 실시

-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동 사업의 경우, '19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월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추경안 편성이 필요한 사안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9〉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177	1,007	2,184	
사무관리비	738	-	738	-
공공운영비	319	-	319	-
연구용역비	-	259	259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2억 5,900만원
전산개발비	100	748	848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 7억 4,800만원
기타보상금	20	-	20	-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4)

- 동 사업은 마을활력소 2개소 추가조성을 지원하고자 기정예산(71억 7,300만원)보다 42억 2,500만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바,
 - ① 도봉(방학1동) 마을활력소에 대한 매입비(10억원), 설계용역비(4,200만원), 리모델링비(4억 6,500만원), 내진보강비(2억

원), 물품구입비(1억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9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② 강동(천호1동) 마을활력소에 대한 공사비(20억 5,000만원)와 감리비(2억 600만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3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사업별설명서에는 도봉(방학1동) 마을활력소는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통해 마을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18년 9월에 부지 및 건물 매입과 구조안전진단을 추진한 이후 설계용역을 시행('18.10)할 계획인 바

- 매입하려는 부지와 건물의 기준가격(5억 1,300만원)이 5,000만원을 초과하여 해당 자치구의 조례²⁹⁾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추경안 제출시점('18. 8.16)이 경과된 9월 11일 현재까지 구유재산심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서울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더라도 구유재산심의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자치구가 부지 및 건물 매입 등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9)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구유재산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 아울러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에도 '19년도중 착공될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보조금(19억원)중 리모델링비(4억 6,500만원), 내진보강비(2억원), 물품구입비(1억원) 등이 해당 자치구로 교부되어도 회계연도중 자치구가 집행하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강동(천호1동) 마을활력소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18년 11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건물 신축공사인 점을 고려하면 공사비(20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교부되는 보조금(23억 2,500만원)을 해당 자치구가 금년도 말까지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금 편성사례의 경우, 서울시로서는 지방보조금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적 타당성은 확보하였을 것이나,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교부된 예산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자치구 입장에서는 소요예산의 조기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다음연도 이월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순세계잉여금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편성요청된 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7,173	4,225	11,398	
사무관리비	130	-	130	-
공공운영비	28	-	28	-
민간위탁금	530	-	530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5	-	215	-
자치단체 자본보조	6,270	4,225	10,495	○ 마을활력소 거점공간 조성 - 도봉(방학1동) 마을활력소 : 19억원 - 강동(천호1동) 마을활력소 : 23억 2,500만원

2) 여성가족정책실

□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국비) (사업별설명서 p.18)

○ 동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조건 보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은 국비 687억 7,200만원과 시비 1,357억 8,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45억 5,600만원을 편성 하였음³⁰⁾

- ①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³¹⁾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이후 보건복지부가 국비교부액을 당초 편성액보다 61억 7,600만원 증액된 7497억 4,900만원으로 변경내시³²⁾함에 따라 추가교부 되는 국비(61억 7,600만원)와 이에 대한 시비대응분(100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여야 하며,
- ②정부미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³³⁾의 경우에는 신규개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70개소) 20억원을 시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4-11〉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국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자치단체 경상보조	(×68,772) 204,556	(×6,176) 18,264	(×74,949) 222,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지원시설 확정내시 반영 증액 : 162억 6,400만원 (국비 61억 7,600만원 포함) ○ 국비 미지원시설 신규개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증액 : 20억원

30)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674 ('18. 7.27)

31)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 국 30%, 시 49%, 구 21%

3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과-1581 ('18. 3.14) "2018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1차 변경내시 및 3월 국고보조금 통지"

33) 정부미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 시 79%, 구 21%

□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사업별설명서 p.19)

- 동 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를 근거로 국비 43억 5,800만원과 시비 366억 9,400만원이 포함된 4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음³⁴⁾
- 그러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보건복지부가 국비교부액을 당초 가내시(43억 5,800만원)보다 27억 2,900만원 증액한 70억 8,800만원으로 '18년 6월 변경내시 한 바³⁵⁾
- 금번 추경을 통해 추가교부 되는 국비(27억 2,900만원)와 이에 대응편성 필요한 시비(13억 1,200만원)를 증액하고자 기정예산(410억 5,300만원)보다 40억 4,1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임

〈표 4-12〉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4,358) 41,053	(×2,729) 4,041	(×7,088) 45,094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307) 8,681	(×124) 124	(×1,432) 8,806	대체교사 증원(294명→318명) : 1억 2,400만원 (국비 1억 2,4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051) 32,371	(×2,604) 3,916	(×5,656) 36,288	보조교사 증원(1,528명→3,550명) : 39억 1,600만원 (국비 26억 400만원)

34)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674 ('18. 7.27)

35)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400 ('18. 6.19) "2018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변경내시 통보"

□ **다함께 돌봄사업** (사업별설명서 p.23)

- 동 사업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를 근거로 9,900만원(국비 2,900만원 포함)을 편성하였음³⁶⁾
- '18년 5월,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산정내역 정정을 사유로 국비를 당초보다 △400만원 감액통보 하였으나³⁷⁾, 사업주관부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선제적으로 운용하고자 ‘우리동네 키움센터’ 21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와 조성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소요될 운영비를 각각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3〉 다함께 돌봄사업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29) 99	(×△4) 1,173	(×24) 1,27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 49	(×△4) 123	(×9)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감액 : 인건비 산정내역 정정 (×△4) ○ 우리동네 키움센터 21개소 신규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 1명 × 2,857천원 × 1개월 × 21개소 - 돌봄교사 : 2명 × 933천원 × 1개월 × 21개소 - 프로그램 : 1,400천원 × 1개월 × 21개소
자치단체자본보조	(×15) 50	(×-) 1,050	(×15)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10억 5,000만원) : 21개소 × 50,000만원

※ 백만원 미만 절사

36)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674 ('18. 7.27)

37)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247 ('18. 5. 28) “2018년 다함께 돌봄사업 예산 변경내시 통보”

3) 일자리노동정책관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별설명서 p.27)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민간공모사업을 통해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등에 대해 생계 및 취·창업을 지원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임³⁸⁾
- 추정안은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신규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로 선정된 서울시 소재 대학 20개소를 통해 대학 졸업예정자(유예자) 및 구직청년 750명에게 민간기업 업무경험기회와 뉴딜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금**(49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³⁹⁾
-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는 지방보조금⁴⁰⁾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38) 서울특별시(일자리노동정책관),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pp.43~47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서울시민

■ 사업유형 및 내용

- 시 직접 추진사업 : 시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추진
- 자치구 추진사업 : 자치구와 협력한 지역현장에 맞는 일자리 사업 추진
- 민간공모사업 : 문화·예술·관광·미디어 등 전문분야에서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

39) ①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18. 8), p.27

■ 지원내역 : 직무교육, 업무경험(월 200만원) + 학점 인정

②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13524 ('18. 8.23)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계획(안)”

■ 지원내역

- 졸업예정자인 경우 민간기업 일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업과 병행 추진
- 일경험 기간 중 청년에게 뉴딜인건비 지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대학에게 사업비 지원으로 모집, 홍보, 심사, 매칭행사 등 총괄적 진행 유도
- 사업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강소기업 지정 우대, 고용보조금 지원 등 검토

40) 지방보조금에는 ① **공공단체에 대한 보조금**(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② **민간에 대한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 보조)이 포함됨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17. 9), p.2

사전검토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⁴¹⁾ 동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편성 하기에 앞서 보조사업자를 공모·심사하기 위한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을 사전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추경안 제출('18.8.16)이후 사업계획만 수립('18.8.23)하였을 뿐, 공모·심사계획, 지원계획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⁴²⁾

〈표 4-14〉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80,662	4,986	85,648	-
민간경상사업보조	22,426	4,986	27,412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 : 49억 8,600만원 = 221만 6,000원(1인당 월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 3개월 × 750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717	-	39,717	-
사무관리비	6,578	-	6,578	-
자치단체경상보조	11,740	-	11,740	-
시설비	200	-	200	-

※ 백만원 미만 절사

41)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8. 3), p.17

■ **사업부서 사전검토 (예산편성 요구안 제출 전)**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유사중복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 사후평가계획

42)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13524 ('18. 8.23)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계획(안)”

※ **추경(안) 심의 확정시, 공모·심사계획, 지원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고,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음⁴³⁾
 -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직무교육과 일경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경안 제출('18. 8.16) 이후 수립된 사업방침에는 '18년 11월부터 '19년 1월까지 일경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음⁴⁴⁾
 - 동 사업은 의회에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회계연도중 완료 가능한 것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에는 실제 추진가능한 일정을 상이하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부터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한 사업은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취업난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① 선정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② 보조사업이 회계연도중 종료되지 않고, 이월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3)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17. 9), p.17~p.18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44)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13524 ('18. 8.23)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계획(안)”

■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 : '18. 9월중
- 사업설명회 : 공고기간중(필요시 공고기간 전)
- 심사·선정 및 협약체결 : '18.10월초
- 청년 모집 및 기업 매칭 : '18.10월말까지
- 강소기업 등 일경험 실시 : '18.11월 ~ '19. 1월
- 사업 평가 : '19. 2월

- 아울러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사업별설명서는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한정된 심사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바,
- 동 사업은 인건비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1인당 월 221만 6,000 원을 750명에게 3개월간 지원하는 것임에도 사업별설명서중 사업 내용에는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고, 산출내역에도 “민간부문 뉴딜일자리 인건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사업별설명서 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사업별설명서 p.30)

- 동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에 청년일자리 센터를 건립·운영하여 청년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15억 3,4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사업설명서에는 '19년 1월 개관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경안 제출이후 현재까지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2~3층) 받은 장소에 대해 건물 등기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동작구가 기부채납·권리이전 및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⁴⁵⁾
-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을 서울시가 자치구로 교부하면 서

45)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26285 ('18. 7.16.) “2019년 시비투자사업 반영 협조”

울시로서는 지출을 완료한 것이겠으나 보조금 등을 교부받는 자치
 구 입장에서는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일 수밖
 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 '18년도말까지 집행 가능한 설계비(3,800만원)를 제외한 14억
 9,600만원에 대해 감액조정하고, 관련 절차이행후 필요시 원포인
 트 추경이나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15〉 청년일자리센터 건립사업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	1,534	1,534	
사무관리비	-	30	30	프로그램비 등
공공운영비	-	184	184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무인경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	20	20	프로그램비
자치단체자본보조	-	1,300	1,300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4) 정보기획관

□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사업별설명서 p.38)

- 동 사업은 도시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일정 등을 검토하여 실제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하는 것은 물론 편성 당시부터 이월이 전제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나
 - 동 편성 사례의 경우, 사업비 전액(4억원)을 확보하여 '18년 10월부터 '19년 2월까지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어⁴⁶⁾ 계약체결이 지연되지 않고 추진되더라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이월을 전제로 예산편성이 요청되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6〉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연구용역비	-	400	400	ISP(도시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실행 전략) 사업비 : 4억원

46)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11103 ('18. 8.17) “스마트시티 도시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계획”

■ 추진일정

- 사업발주 및 계약 : '18. 9 ~ '18.10.
- 정보전략계획(ISP) 용역 추진 : '18.10.~'19. 2.(계약일로부터 5개월)

5) 기획조정실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45)

- 서울시립대학교는 '15년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⁴⁷⁾에 따라 '15년 3월부터 대학회계를 운용한 바 지난 '16년도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일괄 편성 하고 있음
- 금번 추경안의 경우, 교내공간 효율화(28억 100만원), 노후 시설 물 개선(1억 8,100만원) 등에 필요한 35억 4,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그동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4% 이상 증액 의결된 사례가 있고,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는 '18년도 본예산 심사시 제출안보다 2.0%, 11억 3,700만원이 증액의결 되었음에도 당해 회계연도중 6.1%, 35억 4,6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청한 바
 - 시립대학교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이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출안보다 반복적으로 증액편성 요구되는 것은 물론 추경으로 추가적인 증액편성이 요청되고 있어 예산편성시 시립대의 실제 재정수요를 실사하여 적정규모를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정밀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표 4-17〉 연도별 본예산 심사결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단위 : 백만원)

2 0 1 8 년 도			2 0 1 7 년 도			2 0 1 6 년 도		
제출안	증액	의결	제출안	증액	의결	제출안	증액	의결
57,204	1,137	58,341	70,866	2,700	73,566	47,945	1,944	49,889

○ 아울러 시립대의 경우에도 금번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대비 6.1%, 35억 4,60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하고 있으나 설명자료는 단순화되어 있는 바

- 서울시의 예산이 1개 세부사업(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단일 통계목(공립대학운영비)으로 지원되는 만큼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8〉 증액편성 요청내역(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계	3,546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완공에 따른 교 내 공 간 효 율 화 추 진	2,801
노후 시설물 개선(교내 화장실 및 중앙 도서관)	181
중점대학연구소 지원사업 관련 실험실 공간조성	270
캠퍼스타운 추진관련 세부계획 수립 연구	38
노 후 경 유 차 량 교 체	256

※ 자료근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45

6) 경제 진흥 본부

□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사업별설명서 p.58)

- 동 사업은 이른바 ‘제로페이(zero-pay)’를 구축하여 수수료 부담이 없는 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판매자용 공동QR제작 및 배포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7억 7,000만원과 신타조사용역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3,000만원 등 총 30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시스템은 결제망 구조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비용이 판매자에게 전가되는 반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관계기관간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⁴⁸⁾

48)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 (2018. 7.25)

- 정부·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 참여기업 : 네이버,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참여은행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판매자단체 :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소비자단체 : 금융소비자연맹

-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QR제작을 하고 배포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인과 추진일정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해 합의하여 공동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로페이'는 판매자에게 돌아갈 편익만큼이나 사용자가 결제수단으로서 체감하는 편의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참여하는 은행과 이체수수료 면제 범위, 면제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합의가 필요할 것인 바 사업진행 추이에 따라 소요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사업별설명서 p.67)

- 추경안에 편성요청된 내용은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지원 및 공간 조성비를 확보하고자 출연금 5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현행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⁴⁹⁾은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출연 자체에 대해 가·부를 얻기 위한 「출연 동의안」을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
- 사업주관부서 입장에서는 '18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17년 9월, 제 276회 임시회중 의결되어 별도의 「출연 동의안」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49)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은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도 지난 '15년 10월,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 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한다고 통보한 바 있음⁵⁰⁾
 - 또한 지난 '17년 6월, 예결특위전문위원실이 ‘예산전용을 통해 출자·출연금을 **추가 확보**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 의무 출연이 모두 포함’이라고 행정안전부가 회신하였음
- 사업주관부서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회신('18. 8. 3)한 내용을 근거로
 - 지방의회에서 의결받아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출자·출연 여부이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출연금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별도의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시 의결받은 「출연 동의안」에 미리 승인 받은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사료됨

5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53 ('15.10.19),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이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출자·출연을 제한하고,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바
 - 「출연 동의안」은 시의회로부터 출연 자체에 대한 가·부를 얻으라는 것이지 예산액의 과·소를 심사받으라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별도 해설과 회신내용까지 왜곡·해석함으로써 회계연도중 추가 편성이 필요한 출연금이 발생되어도 의회로부터 해당 출연의 가·부를 얻는 「출연 동의안」을 관행적으로 임의 생략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은 의회의 권한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가 출연 자체에 대한 가·부를 구하는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어 증액편성 요청된 출연금 편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복지본부

□ 중앙정부 내시 없이 증액편성 요청된 사업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별설명서 p.84)
- 장애수당-기초 (사업별설명서 p.103)
- 중증장애인연금 (사업별설명서 p.104)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추가 수요 조사에 따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반영하고자 기정예산 67억 2,600만원(국비 51억 4,800만원 포함)보다 21억 4,800만원(국비 10억 3,900만원 포함)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이나,

- 추경안 제출시점까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수요조사('18년 9월 예정)에 대해 국비 추가교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보건복지부도 국비 교부액을 변경내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4-19〉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5,148) 6,726	(×1,039) 2,148	(×6,188) 8,875	-
사무관리비	10	-	10	-
민간자본 사업보조	(×3,162) 3,937	(×294) 657	(×3,456) 4,595	법인시설 화재예방 기능보강 추가소요액 : 6억 5,700만원(국비 2억 9,400만원 포함)
민간위탁 사업비	(×163) 662	(×299) 599	(×462) 1,262	시립시설 화재예방 기능보강 추가소요액 : 5억 9,900만원(국비 2억 9,900만원 포함)
자치단체 자본보조	(×1,823) 2,116	(×446) 892	(×2,269) 3,008	구립시설 화재예방 기능보강 추가소요액 : 8억 9,200만원(국비 4억 4,600만원 포함)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 **장애수당-기초** 사업은 기정예산 291억 1,200만원(국비 90억 300만원 포함)보다 6억원(국비 3억원 포함)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금년도 예산이 과소편성 되어 부족분을 증액편성 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18. 6)⁵¹⁾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집행실적 및 하반기 집행내역 추계를 보건복지부에 제출('18. 8)⁵²⁾ 하였으나
 - 추경안 제출시점('18. 8.16)까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제출내용을 반영하여 국비 교부액을 변경내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편성요청된 추경안은 보건복지부와 유선통화를 근거로 편성요청된 것으로 검토됨⁵³⁾

〈표 4-20〉 장애수당-기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3) 29,112	(×300) 600	(×9,303) 29,712	장애수당 : 6억원(국비 3억원 포함)

- **중증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 인상⁵⁴⁾에 따른 중증장애인연금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1,136억 7,600만원(국비 669억

5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699 ('18. 6.25) “장애수당 상반기 집행실적 및 하반기 집행내역 추계요청”

52)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4028 ('18. 8. 1) “장애수당 상반기 집행실적 및 하반기 집행내역 추계 제출(수정)”

53) 서울시, 예산담당관-9056 ('18. 8.22)

54) '18년도중 기초급여액 단가

- '18. 1.~'18. 3. : 20만 6,050원
- '18. 4.~'18. 8. : 20만 9,960원
- '18. 9.~'18.12. : 25만원

4,400만원 포함)보다 55억 5,500만원(국비 31억 9,300만원 포함)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18. 7)⁵⁵⁾에 따라 상반기 집행내역 및 전망치를 제출('18. 7)⁵⁶⁾하였으나, 추경안 제출시점('18. 8.16)까지 변경내시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편성요청된 추경안은 보건복지부와 유선통화를 근거로 편성요청된 것으로 검토됨⁵⁷⁾

〈표 4-21〉 중증장애인연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66,944) 113,676	(×3,193) 5,555	(×70,137) 119,232	-
사회보장적 수혜금	(×158) 316	-	(×158) 316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6,786) 113,360	(×3,193) 5,555	(×69,979) 118,916	중증장애인연금 : 55억 5,500만원 (31억 9,300만원 포함)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 복지본부 소관 동 3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교부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변경내시도 없이 국비와 이에 대응되는 시비를 증액편성 요청한 사례로서 중앙정부와 유선통의에 근거한 증액편성이라 하여도 국비 편성액을 서울시가 임의로 증액조정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

55) ①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934 ('18. 7. 5)

②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082 ('18. 7.12)

56)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3683 ('18. 7.27) "2018년 장애인연금 상반기 집행실적(6월말) 및 전망치 제출"

57) 서울시, 예산담당관-9056 ('18. 8.22)

- 특히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의 경우, 추경안 제출시점('18. 8.16)까지 중앙정부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국비를 편성요청 하였다는 점에서 추경편성이 타당한지 재검토 필요한 사안으로서 국비 내시 없이 증액편성 요청된 동 사업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도시교통본부

□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사업별설명서 p.119)

- 동 사업은 지하철 역사 및 객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출자금 30억 5,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현행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고,⁵⁸⁾ '18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17년 9월, 제276회 임시회중 의결된 바 있어 금번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출자금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이미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출자 동의는 신규 및 기존, 법정 의무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바 있어 금번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출자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동 출자금과 관련된 안건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17년 9월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는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결 당시, 약 11개월 이후 제출될

58)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되는 사업내용까지 미리 포함하여 의결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미세먼지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사업시행이 지연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의 편성과 심사는 법이 정한 선행절차에 대한 이행여부가 주요기준일 수밖에 없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에 대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 문화본부

□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별설명서 p.136)

- 동 사업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작업을 실시하고자 기정예산(18억 5,500만원) 보다 28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의 산출내역은 ①DDP시설 개보수(26억 4,300만원), ②콘텐츠 공간 리뉴얼(2억원)로 기재하고 있으나 ①DDP시설 개보수 중 IPS(침입차단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전산정보시스템 구축(10억 5,3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 정보화 예비 타당성심사는 물론 시스템구성에 필요한 견적 확인 등의 가격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아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중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관련(10억 5,300만원)은 감액조정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2〉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사업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855	2,843	4,698	DDP 시설 개보수 2,643 콘텐츠공간 리뉴얼 200

□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사업별설명서 p.145)

○ 동 사업은 시유지와 구유지를 활용하여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12억 7,200만원)보다 49억 6,8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당초 동 사업은 구립시설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구립·시립 시설을 복합건립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18. 7)하여⁵⁹⁾ 시비 부담분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기 위해 증액조정을 요청한 것임

〈표 4-23〉 사업계획 변경 현황

당 초 계 획 ('15.11)		변 경 계 획 ('18. 7)		
구립시설	시청자미디어센터	시립시설 ^{주1)}	시청자미디어센터	주차장은 시설규모에 비례하여 배분
	생활체육시설		미디어스타트업	
	도서관		마을미디어센터	
	공연장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도서관		
※ 총사업비 : 200억 7,800만원 ① 국비 : 66억 300만원 ② 시비 : 62억 4,200만원 ③ 구비 : 72억 3,300만원		※ 총사업비 : 259억 6,000만원 (당초계획 대비 29.2%, 58억 8,200만원 증액) ① 국비 : 30억 5,300만원 (당초계획 대비 △35억 5,000만원 감액) ② 시비 : 143억 1,600만원 (당초계획 대비 80억 7,400만원 증액) ③ 구비 : 85억 9,100만원 (당초계획 대비 13억 5,800만원 증액)		

※주1)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구립시설에서 시립시설로 전환
 ② 시설별 공간면적 재조정을 통해 시립시설(미디어스타트업, 마을미디어센터) 추가
 자료근거 : ① 서울시, 문화정책과-6232 ('15.11.10)
 ② 서울시, 문화시설과-5462 ('18. 7. 5) 등을 참고하여 제작성

59) ① 서울시, 문화시설과-5462 ('18. 7.5)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
 ② 서울시, 문화시설과-6899 ('18. 8.27)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 후속 조치사항 알림”

○ 동 사업의 경우, '15년 8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15년 10월 중앙의뢰 투자심사도 이행하였으나,⁶⁰⁾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총사업비가 당초(200억 7,800만원)보다 29.2%, 58억 8,200만원 증가된 바,⁶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⁶²⁾는 투자심사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될 경우, 투자심사를 다시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추가로 증가될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총사업비 관리 및 절차 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24〉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자치단체 자본보조	1,272	4,968	6,240	○ 시립시설 사업비 추가확보 : 49억 6,800만원

60) ①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9375 ('15. 9. 8) ②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11300 ('15.10.30)

61) ① 성북구, 문화체육과-12212 ('16. 6.23)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변경추진계획 알람”

② 서울시, 문화시설과-5462 ('18. 7. 5)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

6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불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 자치구 교부 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별설명서 p.147)
-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 (사업별설명서 p.148)
- 양재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별설명서 p.149)
-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별설명서 p.150)

○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은 강동구 둔촌동에 '16년 9월부터 '20년 2월까지 총 84억 9,100만원을 투입⁶³⁾하여 둔촌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경안을 통해 시비 부담분 7억 6,400만원 전액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사업부서인 서울도서관은 추경예산을 통해 공사 발주시기를 앞당겨 '19년 12월까지 조기완공을 추진할 계획이나 강동구가 서울시로 제출한 자료⁶⁴⁾에 따르면 둔촌 도서관 설계용역은 '18년 12월 완료될 예정이고, 공사는 '19년 2월 착공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경편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자치구의 본공사 계획은 내년도이며 금번 추경으로 소요예산을 교부받을 경우, 이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은 동작구 흑석동에 '17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 총 147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경안을 통해 시비 부담분 12억 6,200만원 전액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63) 84억 9,100만원(국비 15억 8,700만원, 시비 7억 6,400만원, 구비 61억 4,600만원)

64) 강동구청, 문화체육과-16775('18. 7. 9) "2019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사업설명서 제출"

- 동 사업은 당초 '19년도 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동작구가 12억 6,2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나⁶⁵⁾, 사업부서인 서울도서관이 추경예산을 통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2억 6,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추경을 통해 설계 및 공사발주 시기 등을 앞당겨 당초보다 2개월 빠른 '21년 1월까지 조기완공 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추경안 제출('18. 8.16)이후 현재까지 설계공모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 되어도 전액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양재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에 '15년 7월부터 '19년 8월까지 총 84억 4,600만원을 투입⁶⁶⁾하여 양재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경안을 통해 시비 부담분 10억 5,100만원 전액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사업부서인 서울도서관은 추경예산 지원을 통해 설계 및 공사기간 등을 앞당겨 '19년 7월까지 당초보다 1개월 조기완공 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서초구청이 서울시로 제출한 자료⁶⁷⁾에 따르면, 양재도서관 건립공사중 1단계 공사는 '18년 6월부터 '19년 1월까지 기부채납자인 (주)KCC가 공사를 진행하며, 시비와 구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

65) 동작구, 사회적마을과-6873(2018. 7. 9) “2019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사업설명서 제출”

66) 84억 4,600만원(시비 10억 5,100만원, 구비 33억 9,500만원, 민간 40억원)

67) 서초구, 자치행정과-13104(2018. 7. 9) “2019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사업설명서 제출”

는 2단계 공사는 '19년 2월부터 '19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초구청에 교부하더라도 금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됨

○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은 '18년 1월부터 '19년 8월까지 총 27억 4,100만원을 투입⁶⁸⁾하여 은평구 진관동 소재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에 2개층을 증축하고,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추경안을 통해 시비 부담분 3억 3,200만원 전액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사업부서인 서울도서관은 추경예산 지원을 통해 설계 및 공사기간 등을 앞당겨 '19년 6월까지 조기완공하는 것으로 추경사유를 제출하고 있으나

- 은평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⁶⁹⁾에 따르면, 동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추경안 제출('18. 8.16) 이후 현재까지 설계공모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되어도 회계연도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앞에서 검토된 4개 사업은 자치구가 추진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공사를 조기완공 하기 위해 시비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8) 27억 4,100만원(시비 3억 3,200만원, 구비 24억 900만원)

69) 은평구, 문화관광과-17642(2018. 7. 9) “2019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사업설명서 제출”

- 다만, 예산을 자치구로 교부하는 서울시로서는 추경안과 같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여 교부하면 예산집행률은 확보될 것이나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한정된 기간동안 초과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월액이 발생될 경우, 다음연도 세출예산 편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서울시가 금번 추경으로 교부하는 예산의 경우, 현재로서는 해당 자치구가 연도내 집행할 계획이 없거나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일부만 집행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자치구로 교부될 경우,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연도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안중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와 지원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25〉 자치구 교부 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추경안	총사업비					현재 자치구 진행상황
		(계)	국	시	구	민간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764	8,491	1,587	764	6,146	-	둔촌도서관 설계용역(~18.12)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	1,262	14,716	2,400	1,262	11,054	-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컨설팅(~18.12) •설계 공모 미실시
양재도서관 건립 지원	1,051	8,446	-	1,051	3,395	4,000	(주)KCC(기부채납자)의 1차공사가 '19. 1까지 계획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332	2,741	-	332	2,409	-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컨설팅(~18.12) •설계 공모 미실시

□ 하계 행복발전소 내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별설명서 p.146)

- 동 사업은 노원구 하계동에 '16년 8월부터 '20년 2월까지 총 66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하계행복발전소 내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시비 부담분 12억 2,700만원 전액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사업부서인 서울도서관은 설계 및 공사기간 등을 앞당겨 '20년 1월까지 조기완공 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요청 하였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노원구가 도서관을 제외하는 것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시비보조금을 취소요청 한 것으로 확인되어⁷⁰⁾ 추경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4-26〉 하계행복발전소 내 도서관 건립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추경안	총사업비			현재 진행상황 (자치구)
		(계)	시	구	
하계 행복발전소 내 도서관 건립 지원	1,227	6,626	1,227	5,399	건립계획 변경 (도서관 제외) 시비보조금 취소요청

70) 노원구청, 평생학습과-6686('18. 8.14) “2018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시비보조금 취소요청”

10) 행정국

□ 조정교부금 (사업별설명서 p.172)

- 동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⁷¹⁾의 22.6%를 자치구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기정예산(2조 8,829억 2,300만원)보다 4,837억 2,300만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바,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5조⁷²⁾에 따라 금번 추경안을 통해 ① '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조정교부금 차액**(4,452억 7,300만원)을 정산하고, ②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조정교부금분**⁷³⁾ (38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71) ① 지방소비세 중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취득세 인하 보전분과 ② 재산세는 제외

72)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73)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조정교부금분**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세입 과목중 **지방세수입**은 ① **보통세**, ② **목적세**, ③ **지난년도수입**으로 구성됨

- 이 중 **지난년도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나 체납된 수입을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것으로 **보통세분**(보통세 체납액에 대한 것)과 **목적세분**(목적세 체납액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

- **보통세**에 대해 22.6%를 적용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년도수입** 중 **보통세분**에 대해서도 22.6%를 적용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 '18년도 본예산에는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세**에 대한 조정교부금(2조 8,829억 2,300만원)만 편성하고,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조정교부금분은 미반영 하였음

〈표 4-27〉 조정교부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자치구 조정교부금	2,882,923	483,723	3,366,6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교부금 증가액 : 4,837억 2,300만원 - '17회계연도 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액의 22.6% : 4,452억 7,300만원 - 지난년도수입 중 <u>보통세(1,701억 3,500만원)</u>의 22.6% : 384억 5,000만원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 금번 추경안에 증액편성 요청된 조정교부금중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조정교부금분은 384억 5,000만원으로

- 조정교부금 주관부서인 행정국 자치행정과는 금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지난년도수입**(2,365억 9,700만원)중 조정교부금 산출기초가 되는 **보통세분** 1,701억 3,500만원의 22.6%를 적용한 것으로 제출하였으나,74)
- 지방세수입 주관부서인 재무국 세무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년도수입**중 조정교부금 산출기초가 되는 **보통세분**은 1,701억 900만원으로 확인됨75)
- 조정교부금 주관부서가 소요예산 산정시 반영한 **보통세분** 세입예산액(1,701억 3,500만원)과 지방세수입 주관부서가 편성한 **보통세분** 세입예산액(1,701억 900만원)에는 2,6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74) 서울시, 자치행정과-16480 ('18. 8.21)

75) 서울시, 세무과-18154 ('18. 8.23)

〈표 4-28〉 지난년도수입 중 보통세분^{주1)} 반영·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료근거)	조정교부금 산정시 반영된 보통세분 (자치행정과, '18. 8.21) ①	'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보통세분 (세무과, '18. 8.23) ②	차액 ①-②
보통세분 계	170,135	170,109	26
취득세	22,914	22,888	26
주민세	2,633	2,633	-
자동차세	94,789	94,789	-
지방소득세	49,799	49,799	-

※ 주1) 조정교부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 세목(재산세)은 제외

자료근거 : ① 서울시, 자치행정과-16480 ('18. 8.21)

② 서울시, 세무과-18154 ('18. 8.23)

- 따라서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조정교부금분(384억 5,000만원)**은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실제 편성되어야 하는 규모(약 384억 4,400만원⁷⁶⁾)보다 약 600만원이 추가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편성된 조정교부금(약 600만원)은 서울시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조정교부금 산정시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이 중요한 산출기초가 됨에도 관련부서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 정산이 필요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사례로 사료되어 향후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6) 보통세분 세입예산액 1,701억 900만원 × 22.6% = 약 384억 4,400만원

11) 재 무 국

□ 재정정보전금 (사업별설명서 p.178)

- 동 사업은 ① 「지방세법」 개정('07. 7)으로 '08년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⁷⁷⁾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고, ②'01년도에 폐지된 자동차분 면허세에 대한 세입 감소분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임
- 금번 추경안에는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발생 된 특별시분 재산세(694억 1,800만원)를 자치구로 교부하기 위해 기정예산(1조 1,281억 7,500만원)보다 694억 1,8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9〉 재정정보전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정 예 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자치구기타 재원조정비	1,128,175	69,418	1,197,593	공동재산세 전출금 : 694억 1,800만원

77)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 재산세는 '07년도까지 자치구세로 징수되었으나, '08년도부터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일부('08년 : 40%, '09년 : 45%, '10년부터 :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균등배분 하고 있음
- 동 제도는 '07년 7월, 「지방세법」 이 개정되어 '08년도부터 도입된 것이나, 현재는 「지방세기본법」 과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 시세 징수교부금 (사업별설명서 p.179)

- 동 사업은 「지방세징수법」 제17조 등⁷⁸⁾에 따라 자치구에서 징수·납입한 시세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납입액의 3%를 각 자치구로 다시 교부하는 법정경비인 바,
- 금번 추경안에는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징수 된 시세에 대한 처리비용을 자치구로 교부하기 위해 기정예산(3,613억 5,400만원)보다 585억 5,2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0〉 시세 징수교부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정 예 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징수교부금	361,354	58,552	419,906	시세 징수교부금 : 585억 5,200만원

78) ■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군·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12) 평생 교육 국

□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 지방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183)
- 담배소비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184)
-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185)

○ 동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될 경우, 전출금을 편성하여 법정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음⁷⁹⁾

○ 지방세 전출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통세 시세총액의 10%를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어⁸⁰⁾ 지난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취득세를 포함한 보통세 수입이 당초보다 초과 수납되어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보다 17.2%, 2,119억 4,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임

○ 담배소비세 전출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45%를 전출하는 것인 바⁸¹⁾ 지난 '17회계연도

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략)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중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 생략)

결산결과 2억 1,600만원의 정산금이 발생되어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정산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를 전출하는 것으로⁸²⁾ 지난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교육세 수입이 초과 수납됨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13.0%, 1,890억 9,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1〉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기 정 예 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지 방 세 전 출	1,230,170	211,941	1,442,111	•'17년도 정산금 211,941
담배소비세 전출	280,972	216	281,188	•'17년도 정산금 216
지방교육세 전출	1,458,183	189,096	1,647,280	•'17년도 정산금 189,096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략)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 [도(道)는 제외한다]
3. (생략)

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 ➔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취득세 등록분 중 100분의 20(=취득세(취득분+등록분)의 100분의 10), ②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③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④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⑤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⑥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⑦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13) 관광체육국

□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197)

- 동 사업은 관련 조례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사전의결을 얻지 못해 당초 제출된 본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출연금 100만원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⁸³⁾와 출연 동의안⁸⁴⁾을 예산안과 같은날 본회의에서 의결('17.12.15) 하였음

- 추경안에 편성요청된 내용은 금년 4월 출범한 서울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출연금 9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⁸⁵⁾은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출연 자체의 가·부를 얻기 위한 「출연 동의안」을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
 - 사업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어 추가 출연을 위한 별도의 「출연 동의안」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은 의회의 권한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출연금의 과·소를 심사 받는 것이 아니며 회계연도중 추

83) 의안번호 197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의결('17.11.23), 본회의 의결일('17.12.15)

84) 의안번호 1996,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상임위 의결('17.11.23), 본회의 의결일('17.12.15)

85)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편성이 필요한 출연금이 발생되면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출연 자체에 대한 가·부를 얻도록 정하는 것인 바

- 현재까지 **추가 출연의 가·부를 구하는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어 증액편성 요청된 출연금 편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별설명서 p.198)

- 동 사업은 서대문 북아현동에 '17년 1월부터 '20년 3월까지 총 246억 2,400만원을 투입⁸⁶⁾하여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인 바, 금번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12억원)보다 17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2〉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0	1,700	2,900	○ $[(3,300\text{m}^2 \times 2,500\text{천원}) - 2,475,000\text{천원}] \times 60\% \times 49.1\% = 1,700,000\text{천원}$

- 사업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추경예산을 통해 조기 사업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건설인력, 사후관리 및 서비스 인력 등)을 추경 사유로 제출하고 있으나
- 서대문구청이 서울시로 제출한 자료⁸⁷⁾에 따르면, ①소규모 지하 안

86) 246억 2,400만원(국비 24억 7,500만원, 시비 34억 6,500만원, 구비 186억 8,400만원)

87) 서대문구, 문화체육과-11493(2018. 6.22) “2019년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예산(시비)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전성영향 평가 발생 및 ②문화시설과 시설환경의 적정성 검토·보완 등을 사유로 설계를 '18년 11월 29일 완료할 예정인 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로 교부하여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별설명서 p.201)

- 동 사업은 도봉구 도봉동에 '16년 9월부터 '20년 12월까지 총 208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⁸⁸⁾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시비 39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3〉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자치단체 자본보조	-	3,900	3,900	○ (3,632㎡ × 2,500천원) × 70% × 60%(금회요구) = 3,900백만원

- 사업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추경예산을 통해 조기 사업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건설인력, 사후관리 및 서비스 인력 등)을 추경 사유로 제출하고 있으나
- 도봉구청이 서울시로 제출한 자료⁸⁹⁾에 따르면 설계가 '19년 7월 완료될 예정이고, 공사는 '19년 10월 착공할 계획인 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로 교부하여도 전액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88) 208억 2,900만원 (국비 27억 7,500만원, 시비 63억 5,600만원, 구비 117억 4,900만원)

89) 서대문구, 문화체육과-11493(2018. 6.22) "2019년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예산(시비)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14) 시민건강국

□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사업별설명서 p.212)

-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사업은 '19년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병원 입원시 일정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추경안의 경우, 동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 조회 및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추경안 제출시점('18. 8.16)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9월 4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⁹⁰⁾는 예산이

90)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소요되는 정보화사업과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전산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이나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향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⁹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도 '18년 10월부터 '18년 12월까지 제정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일방적으로 낙관하는데 한계가 있고,⁹²⁾ 조례안에 대한 의결도 시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편성 요청된 전산개발비를 승인할 경우, '先예산확보, 後사전절차이행'이라는 모순이 발생될 수 있어 동 전산개발비 편성은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9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2) 지난 '17회계연도에는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예산현액 전액(20억원)이 불용되었고, '15회계연도에도 **안심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절차가 지연되어 예산현액 전액(36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50대 가 장 생활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협의요청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함으로써 예산현액 전액(3억원)이 불용되었음

- 따라서 사업추진의 필요성만큼이나 선행절차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①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②보건복지부 협의, ③ 근거 조례 제정이라는 필수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원포인트 (One-Point)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대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34〉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전산개발비	-	160	160	○ 서울형 유급병가 전산시스템 구축 : 1억 6,000만원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15) 안전총괄본부

□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사업별설명서 p.254)

- 동 사업은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통해 '10년도부터 21년 2월까지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남단)부터 금천구 독산동(금천IC)까지 10.33km(왕복 4차로) 구간에 터널구간을 포함한 소형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임⁹³⁾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실시협약서상 미지급된 건설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공정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기정예산(393억 5,000만원)보다 200억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⁹⁴⁾에 따르면 '공사수행 누계실적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 협약서상 2분기 누적공정률은 47.37%가 되어야 함에도 실제 이행된 실적공정률은 2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⁹⁵⁾ 공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3) 총투자비 7,449억 8,800만원 (민간 5,571억 8,400만원, 시비 1,878억 400만원)

94)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2015.3.11.)

제50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의한 건설보조금을 분기별로 <별표 4>(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이 정한 일정을 따르되 공사수행 누계 실적공정률(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누계 실적공정의 비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실제공정률이 계획공정률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과된 공정에 대한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95) 서울시, 도로계획과-11106 ('18. 8.29)

- 특히, 동 사업에 대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 50조중 단서로 “주무관청은 실제공정률이 계획공정률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과된 공정에 대한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협약서상 계획공정률보다 실제공정률이 현저히 낮아 건설보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사업주관부서는 추정사유를 “실시협약서상 미지급된 건설보조금을 조기 지급하여 공정 조기 완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실시협약서는 실제공정률에 따라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제공정률이 낮은 상황에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추경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의 조건과 다르게 실제공정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서울시가 협약사항을 스스로 무용하게 만드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추정편성이 필요한 사안인지 재검토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사업별설명서 p.271)

- 동 사업은 '04년 4월부터 '20년 12월까지 총 4,108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35억원(국비 30억원 포함)보다 582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에는 '2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금년도 공사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설비(579억 5,300만원)와 감리비(3억원)를 증액편성 요청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표 4-35〉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3,000) 43,500	58,253	(×3,000) 101,753	-
시설비	(×3,000) 42,180	57,953	(×3,000) 100,133	○ 공사비 : 579억 5,300만원
감리비	1,300	300	1,600	○ 감리비 : 3억원
시설부대비	20	-	20	-

○ 동 사업의 경우, 실제 공사에 착수('08. 7)한 이후 ①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년도 이월액만으로 추진된 '11회계연도와 ②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행정안전부 지침⁹⁶⁾에 따라 명시이월이 승인된 '15회계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업주관부서는 추경안에 증액요청된 582억 5,300만원에 대해 ① '회계연도중 4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34억 5,300만원은 2019년 9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제출하였으나⁹⁷⁾ ② 작업계획 조정을 사유로 '회계연도중 100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2019년 6월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수정제출⁹⁸⁾ 하였음에도 최소 482억 5,300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확인됨

96) 행정안전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 ('15. 7), p.3

97) 서울시, 도로계획과-11071 ('18. 8.29)

98) 서울시, 도로계획과-11468 ('18. 9. 6)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사고이월액 발생도 최소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이월99)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소요예산”에서 시설비 기정예산(421억 8,000만원)에 포함된 국비(30억원)를 누락하고 있는 바, 추경안의 첨부서류가 부정확하게 작성될 경우,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9) ■ 「지방자치법」 제128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표 4-36〉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결과 ('17~'08)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총 이 월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불용액
			이 월 액	이 월 률	이 월 액	이 월 률	이 월 액	이 월 률	
			(D)=(B)+(C)	(E)=(D)/(A)	(B)	(B)/(A)	(C)	(C)/(A)	
'17	35,870	34,262	1,578	4.3	-	-	1,578	4.3	30
'16	42,786	27,033	15,440	36.0	-	-	15,440	36.0	311
'15	59,263	16,185	31,766	53.6	31,766	53.6	-	-	11,311
'14	43,928	18,258	25,643	58.3	-	-	25,643	58.3	26
'13	21,254	18,258	2,956	13.9	-	-	2,956	13.9	39
'12	8,000	7,692	304	3.8	-	-	304	3.8	2
'11	16,299	16,227	-	-	-	-	-	-	72
'10	45,494	29,149	16,299	35.8	-	-	16,299	35.8	45
'09	31,162	14,967	15,494	49.7	-	-	15,494	49.7	700
'08	19,829	3,659	5,512	27.7	-	-	5,512	27.7	10,656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16) 도시재생본부

□ 빈집정비사업(도정) (사업별설명서 p.289)

- 동 사업은 '18년 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7. 2.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신규추진 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8,700만원)보다 37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본예산의 경우, ① 빈집실태 조사비용 중 50%를 자치구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5,200만원)과 ② 중앙빈집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2,500만원), ③ 홍보 및 자문을 위해 **사무관리비**(1,000만원)가 포함된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추경안의 경우에는 ① 빈집실태조사를 이미 시행중인 2개 자치구¹⁰⁰⁾ 외에도 23개 자치구에 대해 서울시가 빈집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시설비** 7억 4,700만원과 ② 빈집매입을 위한 **시설비** 30억원을 증액 요청하고,
- ③ 중앙빈집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비용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18. 5)함에 따라¹⁰¹⁾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100)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구비를 매칭하여 빈집실태조사를 기 시행중임

101)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18. 5.31) 제3조 (시스템 운영) LX공사는 협약기관의 의견을 들어 시스템 추가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고, 시스템의 개발 및 고도화 비용은 LX공사가 부담하며 시스템의 권리는 LX공사에 귀속된다.

〈표 4-37〉 빈집정비사업(도정)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87	3,722	3,810	-
사무관리비	10	-	10	-
시설비	-	3,747	3,747	○ 23개 자치구 빈집실태조사 : 7억 4,700만원 ○ 빈집매입 : 30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52	-	52	-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5	△25	-	○ 중앙빈집정보시스템 사용 : △2,500만원 감액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전액(△2,5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은 회계연도중 타 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¹⁰²⁾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 선제적인 감액조정으로 판단됨
- 증액편성 요청된 시설비중 빈집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7억 4,700만원의 경우,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직접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아닌 **시설비**로 편성한 것임

102) '18년 5월 31일 서울시를 포함한 7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동 협약에 따라 시스템의 개발 및 고도화 비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음

- 동 추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초기에 자치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긴급히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려는 의도로 사료되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실태조사를 시·도지사가 아닌 자치구청장의 권한¹⁰³⁾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지난 7월,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¹⁰⁴⁾이 발의되었고, 8월에는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¹⁰⁵⁾을 제출한 바
- 동 빈집실태조사(7억 4,700만원)에 대한 승인여부는 관련법령의 내용과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회 의결결과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04)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의 등을 개정하고, 빈집 활용방법 다양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

※ "빈집"의 정의에 대한 친구조문 대비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_____
1. "빈집"이란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u>6개월</u>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u>주택이나 건축물</u> 을 말한다.	1. _____ <u>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u>다</u> <u>년</u> <u>주택</u> .

10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 동 제정안은 8월 16일 서울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아울러 추경안중 빈집매입을 위한 **시설비**(30억원)의 경우, 사업별 설명서에는 매입대상이나 매입비의 세부산출근거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

- 추경안의 검토를 위하여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매입대상물의 현황, 매입비 세부산출근거 등을 제출요청 하자 사업주관부서는 강북구 인수봉로 소재 빈집(4동, 6필지)을 매입할 예정이며, 빈집매입비 30억원은 ① 매입가격에 대한 주민요구액 24억 700만원과 ② 안전조치 및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 5억 9,3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매입가격은 '18년 8월 의뢰 중인 탁상감정¹⁰⁶⁾ 이후 협의될 것이라고 제출하였음¹⁰⁷⁾

■ 또한 '18년 9월, 감정평가와 빈집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경안이 제출('18. 8.16)된 이후에도 빈집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매입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제출된 바,¹⁰⁸⁾

■ 매입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물론 탁상감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요구액에 기초하여 매입 예정금액(24억 700만원)을 산정한 것은 부적절한 산출근거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매입한 빈집을 활용하여 어떤 시설을 조성할 것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등을 위한 경비(5억 9,300만원) 또한 적정산출로 사료되지 않음

106) 탁상감정(卓上鑑定)이란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대략적인 평가액을 검토하는 것임

107)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8916 ('18. 8.24)

108)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8916 ('18. 8.24)

- 따라서 동 소요예산(30억원)은 세부산출근거의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소요예산(30억원)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빈집매입”을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주관부서는 매입비(24억 700만원) 외에도 안전조치 및 리모델링을 위한 경비(5억 9,300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제출한 바,¹⁰⁹⁾
 - 리모델링 등을 위한 경비는 사업별설명서에 별도로 명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를 기재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사업별설명서는 예산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주관부서는 사업별설명서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09)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8916 ('18. 8.24)

17) 주택건축국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별설명서 p.303)

-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60:28:12의 비율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법」에 따라 ① 임차가구의 소득,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②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추경안에는 기정예산 2,544억 5,700만원보다 192억 100만원 증액된 2,736억 5,800만원(국비 1,865억 8,500만원 포함)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8〉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자치단체 경상보조	(×173,493) 254,457	(×13,091) 19,201	(×186,585) 273,658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 76,560가구 ^{주1)} ×95,000원(평균급여)×0.88(매칭비) ×3개월

※ 주1)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한 서울시 신규 수급자가구 추계 (76,560가구) = 464,000가구 × 16.5%

● 464,000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한 전국 신규 수급자가구 추계
(국토교통부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 16.5% = 서울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frac{\text{서울시에 대한 국비 교부액 (1,734억 9,300만원)}}{17\text{개 시도에 대한 국비 교부액 (1조 513억 2,700만원)}}$ (가내시 및 확정내시 기준)

- 동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국토교통부의 가내시('17. 9)를 근거로 국비(1,734억 9,300만원)와 시비(809억 6,300만원)를 매칭하여 편성한 것이나,¹¹⁰⁾

- 회계연도 개시 이후 「주거급여법」 개정('18. 1)으로 금년 10월부터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신규 수급자가구 추계(46만 4,000가구)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신규 수급자가구가 7만 6,560가구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고, 국·시비에 대한 추가재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18년 7월, 당초 가내시(1,734억 9,300만원)보다 114억 9,300만원 증액된 1,849억 8,600만원으로 국비지원 규모를 변경내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¹¹¹⁾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국비편성액(1,865억 8,500만원)은 국토교통부가 변경내시한 규모보다 15억 9,900만원 초과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표 4-39〉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교부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국토교통부 변경내시 ('18. 7.31.통보) Ⓐ	추 경 예 산 (안) ('18. 8.16.의회제출) Ⓑ	차 액 Ⓑ-Ⓐ
국 비 편 성 액	184,986	186,585	1,599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8. 8), p.303
②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2369 ('18. 7.31.) “18년 주거급여 예산 내시 변경”

○ 사업주관부서로서는 법령 개정에 따라 수급자 증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추가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과거 사례¹¹²⁾를 고려할

110) 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5004 ('17. 9.13.) “2018년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가내시 통보”
② 서울특별시(주택건축국),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85
③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674 ('18. 7.27.)
111) 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5004 ('17. 9.13.) “2018년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가내시 통보”
■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 1,734억 9,300만원
②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164 ('18. 1. 8) “2018년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 1,734억 9,300만원 (가내시된 국비교부액과 동일함)
③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2369 ('18. 7.31.) “18년 주거급여 예산 내시 변경”
■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 1,849억 8,600만원 (가내시된 것보다 114억 9,300만원 증액)

때 추경 이후 국토교통부가 추가적으로 변경내시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변경내시된 국비규모보다 초과하여 편성한 것일 수도 있으나

- 국고보조금의 교부권한은 서울시에 있지 않아 변경내시된 규모를 초과하여 국비가 편성될 경우, 국비 부족수령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응편성된 시비까지 불용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추경안에 편성요청된 국비편성액(1,865억 8,500만원) 보다는 중앙정부의 변경내시(1,849억 8,600만원)를 근거로 국·시비 증액편성 규모가 산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요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국·시비 편성규모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2) 지난 '17회계연도의 경우, 동 사업은 추경('17. 7)을 통해 기정예산 2,138억 1,600만원(국비 1,457억 8,400만원 포함) 대비 28억 8,600만원(국비 19억 6,800만원 포함) 증액된 2,167억 300만원(국비 1,477억 5,200만원 포함)을 편성하였으나, '17년 8월과 10월, 두 차례 변경내시를 통해 국비교부액이 1,500억원으로 증가된 사례가 있음 :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5692 ('18. 6. 4)

18) 물 순환 안전 국

□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사업별설명서 p.344)

- 동 사업은 오류천 주변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하수암거를 신설 및 개량하고자 총 28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35억원) 보다 11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주 공정은 하천일대에 터파기 및 조립식 간이흙막이를 설치하고, 추경으로 확보될 P.C box(암거)를 부설 및 타설하는 것으로서 '19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계획된 오류천 단면확장 1공구 4차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P.C box(암거) 조기 납품을 통해 '19년 1월부터 7월까지 당초 공정보다 3개월을 조기 준공할 계획임

- 사업주관부서는 P.C box(암거) 조기 납품을 위해 '18년도에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금번 추경에 11억원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 P.C box(암거)는 관급자재로서 물품제조계약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113)에

11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제39호) 제15장(물품계약 일반조건)

■ 제5절 (물품계약의 이행)

1. 물품의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 제8절(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

는 물품계약에 따라 ①물품을 납품하고, ②물품을 검사한 이후, ③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경으로 편성요청한 P.C box(암거)의 경우, 실제 예산이 집행가능한 시점은 '19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P.C box(암거)의 경우, 지방서¹¹⁴⁾상에 한국PC콘크리트 암거공업협동조합에서 제작한 표준양식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¹¹⁵⁾에 따라 전자입찰 뿐만 아니라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18년도에 P.C box(암거) 구매를 신청(발주)하고, 공정포에 따라 '19년 1월 이후 P.C box(암거)를 납품 받은 다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14) 지방서 : 제품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

115)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19) 시립미술관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385)

- 동 사업은 기정예산(15억 7,400만원) 대비 1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①남서울미술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6,500만원)와 ②조명트랙 바텐 교체 공사(6,800만원)를 시행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1억 3,3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냉·난방시설의 유지경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되, 난로 “구입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하고,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는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¹¹⁶⁾
- 따라서 동 사업의 증액편성 사유가 “구입”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넘어

116)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7. 7), p.116 및 p.133

■ 공공운영비(201-02)

2. 연료비

가.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3. 시설장비유지비

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 시설비(401-01)

4. 시설비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타자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교체설치일 경우에는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인바

- 동 증액편성 사례는 **자산및물품취득비나 시설비**로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에도 소요예산 전액(1억 3,3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의적으로 계상하고 있어 예산과목(통계목)이 행정편의적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내용과 세출과목이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표 4-40〉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574	133	1,70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6	-	406	
사무관리비	14	-	14	
공공운영비	1,042	133	1,175	○남서울미술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 6,500만원 ○조명트랙 바텐 교체 공사 : 6,800만원
국외업무여비	20	-	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	-	7	
특정업무경비	46	-	46	
시설비	30	-	30	
자산및물품취득비	8	-	8	

※ 백만원 미만 절사

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

1)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 개요

- 2018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따라 기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시행한 바
- 금년도 본예산부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2,211억 5,600만원)은 해당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귀속한 바
- 금번 추경안을 통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전입금(2,211억 5,600만원)과 회계간 유상이관에 따른 토지매각수입(210억 7,300만원)¹¹⁷⁾을 편성요청 하고, 이와 연동하여 세출예산도 2,422억 2,900만원을 증·감 조정 요청한 것임
- 기정예산의 경우, (1) 수익적수입 및 지출중 ①사업수익 7,637억 4,300만원, ②사업비용 3,707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2) 자본적수입 및 지출중¹¹⁸⁾ ①자본적수입 1,965억 4,100만원, ②자본적지출 5,895억 6,4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117)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172

118) 자본적수입 및 지출중 지출액 대비 수입액 부족분(3,930억 2,200만원)은 당년도 순익계정유보자금(3,930억 2,2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4조에 명시

- 추경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전입금(2,211억 5,600만원) 및 토지매각수입(210억 7,300만원)을 수입지출에 반영하여 (1) 수익적수입 및 지출중 ①사업수익 9,848억 9,900만원, ②사업비용 4,010억 5,700만원으로 계획하고, (2) 자본적수입 및 지출중¹¹⁹⁾ ①자본적수입 2,176억 1,400만원, ②자본적지출 8,014억 5,6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422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경우에도 기정예산과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아울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총칙 제14조를 통해 회계연도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기타보조금 등을 간주처리 하도록 하고 있음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기정예산 9,602억 8,500만원보다 2,422억 2,900만원 증액 편성된 1조 2,025억 1,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예비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¹²⁰⁾ 공기업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사업예산은 기정예산(12억 9,200만원)보다 30억 1,800만원 증액된 43억 1,100만원을 편성하고, (2)자본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119) 자본적수입 및 지출중 지출액 대비 수입액 부족분(5,838억 4,100만원)은 당년도 손익계정유보자금(5,838억 4,1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총칙 제4조에 명시하고 있음

120) 「지방공기업법」 제31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자치구 소관 하수관로 등에 대한 추경안 편성

-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¹²¹⁾를 근거로 ‘내경 900mm 미만 하수관로’에 대해 시장 제출안 외 예산편성을 제한하였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하수도 요금인상 및 자치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내경 900mm 미만 하수관로’가 포함된 자치구 시설을 정비하고자 소요예산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¹²²⁾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 사업비의 경우, 일부 비용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하수관로에 해당되나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12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

-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 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 다. 차집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 라.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비
- 마.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 및 모터펌프 교체비
-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 사업비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 가. 내경 900mm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 나.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 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 다. 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 라. 빗물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과 하수도 부대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의 부담만으로는 공공하수도가 원활히 관리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122) 물순환정책과-15140 ('18. 8.22)

-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를 비롯한 시의회가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하수관로’에 대해 일부 증액편성을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증액편성을 제한한 입장과는 극명히 대치되는 편성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하수관로’에 해당하나 자치구별 긴급한 현실을 고려한 의회의 증액요구에 대해서 동 추경안 편성에 적용된 서울시의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형평을 맞추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41A〉 추경안중 자치구 소관 하수관로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mm)

사 업 명	추경요청액	관리주체	공사주체	내 경
망우로 12길 51주변 하수관로 (주 1) 개량	200	자치구	자치구	800~1,200
중랑중학교 주변의 1개소 하수관로 개량	500	"	"	900~1,000 ^{주2)}
목동 도시재생사업구간 노후 하수관로 개량	60	"	"	450~700
장위13 도시재생시범사업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500	"	"	300~1,200
미아동 125-25주변 하수관로 개량	120	"	"	900~1,350 ^{주2)}
온곡중학교~온수골사거리간 하수관로 개량	50	"	"	300~600
신사동 234-9 외11개소 하수관로이설 실시설계 용역	20	"	"	300~1,200
마포대로 236 외1개소 원형관로 보강	500	"	"	300~600

※ 주1) 하수관로 개량(80백만원) 및 원형관로 보수 (120백만원) 포함

주2) 내경 900mm 이상 하수관로에 해당하여 시장이 부담

자료근거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15140 ('18. 8.22)

〈표 4-41B〉 추경안중 자치구 소관 하수관로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mm)

사 업 명	추경요청액	관리주체	공사주체	내 경
대 흥 로 9 안 길 1 9 하 수 관 로 이 설	130	자치구	자치구	450
방 화 동 6 0 7 - 2 7 일 대 하 수 관 로 개 량	150	"	"	600~800
독 산 로 9 4 가 길 1 7 일 대 하 수 관 로 개 량	150	"	"	450
동 일 로 2 1 3 길 오 수 관 로 개 량	200	"	"	450
연 서 로 1 5 길 3 5 주 변 원 형 관 로 보 수	360	"	"	450~500
상 계 로 1 7 길 1 2 5 일 대 원 형 관 로 보 수	650	"	"	450~1,000

※ 자료근거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15140 ('18. 8.22)

3)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추경안 편성

□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133)

□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140)

○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802억 8,000만원)보다 23억 1,900만원(민간위탁금 4억 2,000만원 포함) 증액 편성 요청한 바

- 증액편성 요청된 민간위탁금의 경우, 장기사용 노후설비의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

정예산(470억 2,400만원)보다 0.9%, 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18년도 기정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검토하면, 기 편성된 동 민간위탁금(470억 2,400만원)중 8억 1,700만원이 낙찰차액을 사유로 불용처리 될 것으로 사업주관부서가 제출한 바¹²³⁾
 - 낙찰차액은 재활용(임의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부서가 증액편성만 요청한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공유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
- 아울러 증액편성 요청된 민간위탁금은 용역 1건(2,000만원)을 제외하고,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판단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¹²⁴⁾은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를 구분하고 있고, ①민간위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의미하며 ②민간대행사업비는 “시설물의 건설 등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에 편성 요청된 민간위탁금중 “장외영향평가 용역 실시” 2,000만원을 제외한 4억원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유지관리비를 민간

123) 서울시, 물순환정책과-15140 ('18. 8.22)

124)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pp.131~135

위탁금에 포함시킬 경우,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편성사례가 될 수 있어 세출과목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과목은 예산심사중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나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의 구분취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관행적인 예산 과목 선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2〉 동 사업의 사업설명서중 민간위탁금 추경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 경 액	추 경 사 유
4건	420,000	
1 처리장 최종 침전지 주행사이편식 슬러지수집기 정비 공사	300,000	노후로 인한 차륜, 감속기 등의 잦은 고장 및 부분 정비로 하수처리에 지장 초래
2 처리장 보일러실 방폭 개선 조명설비 공사	50,000	PSM(공정안전보고)관련 법규준수 보일러실 방폭 조명 및 전기시설보완
1 처리장 발전기실 방폭지역 조명설비 개선 공사	50,000	PSM(공정안전보고)관련 법규준수 발전기실 조명 방폭으로 시설보완
장외 영향평가 용역 실시	20,000	유독물관련 법규준수 암모니아 가성소다등 장외 영향평가서 제출

※ 자료근거 : “2018년도 추경1차예산(안) 사업설명서”(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p.134

-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의 경우, 시설비를 기정예산(16억원)보다 22.5%, 3억 6,000만원 증액한 19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증액요청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기편성된 시설비(16억원)의 경우, 8월15일 현재, 25.2%, 4억 3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된 것으로 확인되어¹²⁵⁾ 금번 추경안으로 증액편성 요청된 시설비(3억 6,000만원)가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여건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본예산 심사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시설비 16억원으로 고효율 터보송풍기 4대 및 부대설비를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당초 추진일정을 계획하였으나 기정예산(16억원)중 74.8%, 11억 9,6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제출되어¹²⁶⁾ 사업추진일정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경안으로 편성요청한 송풍기(2대)의 경우, 기존 운영중인 공기베어링 타입 송풍기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요청된 송풍기(고효율 터보송풍기)와 차이가 있어 설치완료 기간이 다를 것으로 사료되는 바 편성요청된 예산의 적기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의 경우, 제출된 사업별설명서는 기정예산으로 추진중인 송풍기와 추경안으로 편성요청한 송풍기 유형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의 증액편성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별설명서는 보다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25) 서울시, 물순환정책과-15140 ('18. 8.22)

※ 기정예산(16억원)중 8월15일 현재 4억 300만원 집행되고, 11억 9600만원 이월액 발생예상

126) 서울시, 물순환정책과-15140 ('18. 8.22)

4. '18년도 본예산 삭감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한 사업

-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별설명서 p.1)
-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31)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p.32)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p.52)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별설명서 p.132)
-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사업별설명서 p.254)
-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사업별설명서 p.377)
- 창동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48)

○ 동 사업은 '18년도 본예산 심사시 당초 편성요청된 예산액중 일부가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어 행정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요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의회의 예산심사결과 삭감된 경비에 대해 추경으로 복원이나 증액편성을 지양하고 있고, 삭감된 경비에 대해 예비비를 통한 우회 지출까지도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음¹²⁷⁾

- 특히,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중 7개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감액시 발생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결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취지를 존중하여 의결한 것임

127) 행정안전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p.403.

- 따라서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추경을 통해 증액편성을 요청할 만큼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43〉 본예산 삭감 내역 및 추경 증액요청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세출과목	본 예산			추 경 예 산		
		(제출안)	(상임위감액) ^{주1)}	(예결위감액)	(의결)	(증액요청)	(추경예산안)
사회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	478	-	△80	398	130	528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계	22,874	△2,082		20,791	837	21,629
	민간위탁금	15,435	△1,017	-	14,417	837	15,255
	민간위탁사업비	7,285	△1,064	-	6,220	-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50	△440	-	2,710	243	2,953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출연금	54,300	△4,300	-	50,000	1,040	51,040
녹색교통지역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계	8,621	△7,862		759	18,003	18,763
	시설비	8,151	△7,391	-	759	17,439	18,199
	관리비	453	△453	-		460	460
	시설부대비	16	△16	-		104	104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시설비	45,000	△5,650	-	39,350	20,000	59,350
공무원채용 및 기타시험관리	사무관리비	4,773	△2,000	-	2,773	1,000	3,773
창동2배수분구하수관로 종합 정비	시설비	4,680	△2,000	-	2,680	1,000	3,680

※ 주1) 각 상임위별 본예산 예비심사보고서 발취

- 아울러 도시교통본부 소관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규모(△78억 6,200만원)보다 129%, 180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안으로 제출한 바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의회가 숙고하여 감액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회의 권한이며 감액의결한 결과중 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②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 경우, 동 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재의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동 추경편성 사례와 같이 의회의 의결결과와 대치되는 확대편성이 제출될 경우, 예산심사권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사례일 수 있어 향후에는 의회가 감액조정하여 의결한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증액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 당해연도 중 해소될 수 있는 현안문제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편성에 앞서 소관 상임위 등에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협의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¹²⁸⁾

128)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제진흥본부 소관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의 경우, '18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제276회 임시회('17년 9월 6일)중 의결된 바 있어 금번 추경안에 편성요청한 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출연 동의안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출연 동의는 '신규 및 기존, 법정 의무 출연이 모두 포함'된다고 회신한 바 '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993)」과는 별도로 추가 출연 자체에 대한 가·부를 얻는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은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권한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가 출연 자체에 대해 가·부를 구하는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어 증액편성 요청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에 편성요청된 출연금 편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V. 추경조정 필요사업 (추경안 미편성 사업)

1. 사업물량을 축소하였으나 추경안에 미반영한 사업

□ 병물아리수 공급 (상수도사업본부)

- 동 사업은 병물 아리수 용기 등을 구매하는 일반재료비(7억 7,900만원)를 포함하여 15억 1,300만원을 '1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지난 6월, 환경부의 「공공부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병입수돗물 개선계획 수립지침」¹²⁹⁾과 상수도사업본부의 「병물아리수 공급기준 개선 계획」¹³⁰⁾에 따라 당초 '18년도 생산목표를 650만병으로 계획¹³¹⁾하였으나 300만병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
- 금년도의 경우, 7월말까지 167만병을 생산하여 167만병을 공급하였으나 직전년도의 경우, 7월말까지 313만병을 생산하여 315만병을 공급한 것으로 제출된 바¹³²⁾
- 환경부 및 상수도사업본부의 병물아리수 생산 감축 계획에 따라 실제 생산 및 공급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129) 환경부, 수도정책과-4157, “병입수돗물 생산 공급 개선계획 수립지침안 송부 및 개선계획 제출 요청, ('18. 6)

130)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6502, “병물아리수 공급기준 개선 계획”, ('18. 6.21)

131) 상수도사업본부, 행정관리과-314, “2018년 병물아리수 생산자재구매 계획”, ('18. 1.10)

132)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8591 ('18. 8.10)

〈표 5-1〉 병물아리수 생산 현황

(단위 : 병, %)

	' 1 8 년 도	' 1 7 년 도	증 감	증 감 륜
계	1,670,592	3,137,240	△1,466,648	△46.7
1월	271,142	308,700	△37,558	△12.2
2월	351,280	382,760	△31,480	△8.2
3월	509,536	409,420	100,116	24.5
4월	256,200	423,992	△167,792	△39.6
5월	46,610	484,480	△437,870	△90.4
6월	94,694	513,028	△418,334	△81.5
7월	141,130	614,860	△473,730	△77.0

〈표 5-2〉 병물아리수 공급^{주1)} 현황

(단위 : 병, %)

	' 1 8 년 도	' 1 7 년 도	증 감	증 감 륜
계	1,677,696	3,151,516	△1,473,820	△46.8
1월	319,124	306,032	13,092	4.3
2월	295,026	367,736	△72,710	△19.8
3월	447,868	407,072	40,796	10.0
4월	339,132	452,282	△113,150	△25.0
5월	16,329	546,944	△530,615	△97.0
6월	74,608	549,992	△475,384	△86.4
7월	185,609	521,458	△335,849	△64.4

※ 주1) 공급이 생산을 초과하는 직전년도 생산부중 일부가 공급된 것임

- 그러나 7월말 현재, 동 사업에 편성된 일반재료비중 94.0%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예산액의 94.6%를 이미 지출원인행위함으로써 회계연도말 실제 발생가능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4.6%, 3,500만원이 될 것으로 제출하였음¹³³⁾
- 따라서 병물아리수의 실제 생산과 공급은 전년동기 대비 △46% 가량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편성된 예산액은 실제 생산과 공급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미 기편성된 예산액의 94.6%를 지출원인행위하여 예산운용과 병물아리수 감축계획을 연계시키지 않은 것을 입증한 것으로 사료됨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부 전입금을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¹³⁴⁾ 여유재원이 발생될 경우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고, 불용액이 발생되어도 다음연도에 동일 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환원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는 불용액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사료되어 동 사안과 같이 예산운용과 병물아리수 감축계획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재정현실에 둔감한 것은 아닌지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33)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8591 ('18. 8.10)

134) ■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략~)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비 감액통보 이후 추경안 미반영 사업

- 국고보조금이 서울시로 증액되거나 추가 교부될 경우, 예산서중 예산 총칙 제9조에 근거하여 간주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감액통보될 경우, 추경을 통한 경정 이외에 세입·세출을 감액조정할 방안이 없음

- 그러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금년도부터 신규 추진 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아동수당법」에 따라 '18년 9월부터 소득수준이 하위 9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의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 당초 본예산에 보건복지부 확정내시('18.12)를 근거로¹³⁵⁾ 국비 973억 3,300만원과 시비 456억 7,700만원을 포함한 1,43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18년 6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대한 국비교부액을 확정내시(973억 3,300만원)보다 △76억 6,300만원 감액된 896억 7,000만원으로 변경내시한 것으로 확인됨¹³⁶⁾

 -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초기에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변경내시가 통보될 가능성도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국비 추가교부를 통보하지 않고, 지난 6월 변경내시한 국비

135) 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8131 ('17.12.12) "2018년도 아동수당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안) 통보"

②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674 ('18. 7.27) "국고보조금등(511) 내시현황"

136) 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720 ('18. 6.18) "2018년도 아동수당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1차 변경내시(안) 통보"

②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674 ('18. 7.27) "국고보조금등(511) 내시현황"

(896억 7,000만원)만을 교부할 경우, 국비가 편성액(973억 3,300만원)보다 △76억 6,300만원 부족수령될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추경안에는 감액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5-3〉 아동수당 지원 사업 국비 내시·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중 앙 정 부 내 시 현 황			본 편 예 산 액	국 부 족 수 령 액 예 상 액
	가 내 시 ('17. 9)	확 정 내 시 ('17.12)	변 경 내 시 ('18. 6)		
			①	②	①-②
아동수당 지원	129,535	97,333	89,670	97,333	△7,663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 도시교통본부 소관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국·시비 40:60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사업¹³⁷⁾으로 금번 추경안에는 증·감 편성요청되지 않은 사업임

○ 본예산의 경우, 저상버스 428대분 도입을 지원하고자 국비(171억 5,700만원)와 시비(257억 3,600만원)를 매칭하여 42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¹³⁸⁾

- '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기편성된 국비(171억 5,700만원)보다 △66억 3,800만원 감소된 105억 1,900만원(저상버스 287대분)을 서울시에 배분통보 하였음¹³⁹⁾

137) 서울시내 버스회사가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는 저상버스 구입가격(약 2억원)과 일반버스 구입가격(약 1억원)의 차액을 제작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199

138)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198

139) 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23 ('18. 1.24) "2018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국고보조금 배분 알림"

○ 도시교통본부는 국비가 기편성된 예산보다 감액통보되자 대응편성된 시비(257억 3,600만원)에 대해 “예산의 변경”¹⁴⁰⁾을 통해 △99억 5,600만원을 감액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¹⁴¹⁾

- 대응편성된 시비는 예산의 변경으로 감액조정할 계획임에도 이미 기편성액 보다 감액되어 통보된 국비는 금번 추경안에 감액조치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5-4〉 저상버스 도입 사업 국고보조금 배분·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국 토 교 통 부 가 서울시에 배분('18. 1)한 비 ①	본 편 예 성 ②	산 액 국 부 예 족 수 상 ①-②	비 령 액
저상버스 도입	10,519	17,157	△6,638	

- 회계연도중 국비가 편성액보다 추가교부 될 경우,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9조¹⁴²⁾를 근거로 간주처리가 가능하나, 국비가 편성액보다 감액교부되거나 미교부 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한 경정 이외에 세입·세출 예산을 감액조정할 방안이 없고, 의회는 제출된 추경안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조정을 할 수 있음¹⁴³⁾

②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674 ('18. 7.27) “국고보조금등(511) 내시현황”

140) 예산변경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임

141) 서울시, 버스정책과-23301 ('18. 8.29)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변경계획”

142)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143) 행정안전부(구.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15.12), p.73

■ “지방의회의 추경예산 심의시 당초예산 수정”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 질의 : 지방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출하지 않은 당초예산을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의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정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범위 내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 등이 당초 내시규모보다 감액 통보될 경우, 추경으로 세입·세출을 감액조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계연도 결산시 세입결산은 재원없는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세출결산은 '재원 없는 불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대응편성된 시비 또한 불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감추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운용결과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